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송 쌍 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I. 地方自治의 活性化와 消費稅制의 相關性

1. 「지방자치 활성화」의 의미

지방자치제도가 그 기능을 활발하게 발휘토록 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진정한 민주정치 선결요건이라고 보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동시에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방자치가 충분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의 발전을 열망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우리가 직면한 至上課題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라고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地方分權의 토대 위에서 각종의 제도 및 행정 재정 교육 문화 등을 자기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활발히 운용·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①제도자치 ②재정자치 ③행정자치 ④교육자치 ⑤문화자치 등이 한결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는 중앙정부와 적정한 均衡과 調和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와는 무관한 세계 속의 자치는 아닌 것이며, 나라 안에서의 자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號」가 순항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부문의 量的成長과 質的進歩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들 성장 및 진보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기약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이 참다운 의미에서 향상되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조리와 부작용을 낳는 모순을 불러올 수도 있다.

2.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세제 및 소비세제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으로서의 制度自治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필요한 法制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틀을 지방분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

논 단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치단체 스스로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드웨어’의 구축에 해당한다. 行政自治는 이미 마련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작용을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財政自治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을 자치단체 자체의 역량으로 꾸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教育自治는 국가적인 교육목표의 달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文化自治는 지역문화를 선양하는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있는 문화사업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네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개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政治의 일부이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돈이 없이는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상의 지방자치를 위하여도 역시 돈(財源)의 조달은 필수불가결하다. 즉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참다운 의미의 지방자치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민주정치는 ‘고비용의 정치’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고 전제한다면, 민주주의의 훈련장

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무대에서 고비용은 불가피한 부담일 도리 밖에 없다. 요컨대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自治財源』)의 조달이 기본적인 과제가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조달은 국가재정경비의 경우처럼 예외없이 자주적으로만 조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조달되는 부분도 있다.¹⁾ 이는 지방재정이 지니는 특성의 하나이며, 지방재정을 自主財源과 依存財源으로 나누는 근거가 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재정 재원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크기만에 초점을 맞추어 財政財源規模만을 검토할 일이 아니라 그 구성내용에도 초점을 맞추어 財政財源構造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검토가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만약 지방재정의 재원구조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한다면, 그만큼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얻어쓰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필연적으로

1) 이는 地方財政調整制度(地方交付稅, 國庫補助金, 地方讓與金 등)를 뜻한다.

논 단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그에 예측된 『跛行的 自治』로 전락하여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 자치가 되고 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치재원의 구조면에서 의존재원의 역할과 비중을 음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자주재원의 대부분은 조세수입(지방세수입)으로 충당된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재원의 주종이 조세수입인 점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자주재원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크기에 초점을 맞추어 租稅收入規模(稅收規模)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내용에도 초점을 맞추어 租稅收入構造(稅收構造)를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으레 문제되는 세수규모의 확대를 위한 대책의 모색은 세수구조의 분석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세수입과 稅外收入 합계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재정자립도는 현재 대략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²⁾ 이는 거꾸로 현행 지방세제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비중이 평균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³⁾ 그렇다면 이처럼 의존재원의 폭이 넓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빚어내는 현행 지방세제에는 심각한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서 자주재원(自體財源) 중에서 지방세의 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稅外收入額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사실도 문제이다(후술 참조).⁴⁾⁵⁾

- 2) 2000년도의 경우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59.4%이었다(行政自治部 : 『地方自治團體 豫算概要』(行政自治部, 2000)<이하 『豫算概要(2000)』이라 약칭> 88면 참조). 이러한 자립도는 1990~1998년에는 모두 62.2~69.6%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999년은 59.6%)(전거서 89면 참조).
- 3) 위 『豫算概要(2000)』 8면에 의하면 2000년도의 의존재원규모는 32%에 불과하다. 이 차이는 중복계산분을 공제하는가의 여부 및 순계예산규모로 산출하는가 혹은 총계예산규모로 산출하는가에 따른 차이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30%를 넘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사건으로는 이 비중이 대략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 4) 『豫算概要(2001)』에 의하면, 2001년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17조 2,43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세외수입의 수입액은 매우 큰 편이므로 이것을 늘리는 예산편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5) 지방체에 비하여는 지방세의 수입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이는 비교차원에서 검토할 일은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곧 지방세 세수액을 늘리는 방향의 지방세제개편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지방세 세목에 관하여 과세대상의 확대 또는 세율의 상향조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稅收規模를 늘리도록 하는 세제개편이다. 그 둘은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개발하는 세제개편이다. 그 셋은 이미 있는 내국세 세목의 일부를 지방세제로 이관시키는 세제개편이다⁶⁾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마당에서는 이들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고려하여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최적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각 방안을 地方消費稅制에 국한하여 거론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지면관계상 地方所得

稅制 및 地方財產稅制를 함께 논의하기 곤란할 뿐더러 현행 지방세제도 아래에서 소비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개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⁷⁾

II.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必要性

1. 지방세제상의 소비과세 비중

2001년도의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예산을 합한 총계 예산의 규모는 199조 2,824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자가 전체의 68%인 134조 7,932억원이며, 후자는 32%인 64조 4,892억원이다. 그리고 전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재정 조정재원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채는 결국 나중에 지방세의 수입으로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6) 이 개편은 이미 있는 내국세 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경우와 기존의 내국세를 共同稅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 지방소득세제에 관하여는 그 세수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이 지방소비세제의 경우와 흡사하다(표 1) 참조). 그러나 그 세수규모를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이나 그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목 신설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는 수월치 않다. 다음으로 지방재산세제에 관하여는 지방소득세제 및 지방소비세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세수규모는 큰 편이지만, 현행綜合土地稅와 같은 재산과세의 세수규모를 키울 필요가 절실하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특히 종합토지세는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지나친 低率課稅가 행하여져 왔다.

논 단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인 ①지방교부세 ②지방양여금 및 ③ 국고보조금 등 21조 4,236억원을 공제한 순계예산의 총규모는 177조 8,588억 원이다.⁸⁾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전체의 64%인 113조 3,696억원이 되며, 그 나머지 64조 4,892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규모를 예산 상으로 비교하면, 국세가 95조 8,991억 원으로 조세총액 119조 3,739억 원의 80% 수준이며, 지방세가 23조 4,748억 원으로서 조세총액의 20% 수준이다. 이는 위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예산비율에 비추어 볼 경우에 지방에 대한 세원배분의 비율이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⁹⁾

이처럼 중앙과 지방 사이에 예산면의 실질적 財源配分과 형식적 稅源配分 사이에 서로 심한 격차가 생기므로 말미

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총액 중에서 지방세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6.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낳고 있다.¹⁰⁾ 즉 조세수입이 그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租稅國家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은 유독 지방세세수액이 그 전체 재원배분액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가운데에서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체 자주재원(자체재원)¹¹⁾ 중에서 지방세비중은 절반을 약간 넘는 5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¹²⁾ 이것은 자못 심각한 不調和現象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부조화현상은 지방세의 수입만으로써는 그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8개 단체 중 59%에 해당하는 146

8) (84,604억 원<지방교부세> + 41,133억 원<지방양여금> + 88,499억 원<국고보조금>) = 214,36억 원

9) 이상 行政自治部 : 『地方自治團體 豫算概要』(行政自治部, 2001) <이하 『豫算概要(2001)』로 약칭> 참조.

10) (234,748<지방세예산액> / 644,892<지방예산 총액>) × 100(%) ≃ 36.40(%)

11) 234,748억 원<지방세예산액> + 172,437억 원<세외수입예산액> + 23,471억 원<지방채예산액> = 430,656억 원<자체재원 예산총액>(자료 : 『豫算概要(2001)』)

12) 234,748 / 430,656 × 100(%) ≃ 54.50(%)

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¹³⁾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과 같이 자주재원의 절대적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처지에서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세의 세수비중이 낮은 이유 중에는 소비과세의 세수규모가 너무 적다는 사실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을 보면 1999년의 경우 지방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5%였으며,¹⁴⁾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는 각각 13.6%, 14.0%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의 세수비중이 낮다는 점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추세이었다.¹⁵⁾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자치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지방소비세제 확충의 당위성

현행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 세원구조면에 있어 세원 상호간의 균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세 세원의 구성을 국세 세원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즉 국세는 稅收伸張性이 높은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한 과세와 所得彈力性이 큰 소득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높은 데에 비하여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 定額課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제개편이나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이 없이는 재정수요의 자연증가에 상응하는 세수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13) 위 『豫算概要(2001)』의 분석에 의하면, 2001년도의 경우 전국의 시·군·구 중 72시 가운데 18개, 91군 중 75개, 그리고 69자치구 중 53개가 ‘人件費 未解決團體’로 나타난다.

14) 재산과세와 소비과세 성격을 아울러 갖는 자동차의 세수액을 포함시킬 경우 68.2%이다.

15) 일본·독일·미국 등의 경우에는 조세 총액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우리의 경우보다 대개 세배 이상 높다는 분석에 관하여는 이근식·송쌍중·원윤희·최명근·최용선: 『稅制構造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서울市 稅制를 中心으로—』(서울市立大學校 産業經營 研究所, 1996)<이하 『稅制改編方案』으로 약칭>] 242면 이하 참조. 그리고 이 책의 이영희연구위원의 글을 참조할 것.

논 단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표 1>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별 구성 비교(1999)

(단위 : 억원, %)

| 세 원 별 | 국 세 | | 지 방 세 | |
|-------|---------|------|---------|------|
| | 세 수 | 구성비 | 세 수 | 구성비 |
| 총 계 | 744,781 | 100% | 180,818 | 100% |
| 소득과세 | 252,200 | 33.9 | 24,549 | 13.6 |
| 소비과세 | 400,193 | 53.7 | 25,275 | 14.0 |
| 재산과세 | 19,185 | 2.6 | 104,052 | 57.5 |
| 기 타 | 73,203 | 9.8 | 26,942 | 14.9 |

자료 : 행정자치부, 『地方稅概要(2000)』 및 재경부, 『조세개요(2000)』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지방재정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지방세 세수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재원구조의 개선을 꾀하여야 마땅하지만,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방소비세제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제에 있어 재산과세의 강화 또는 소득과세의 확대 등의 방안보다는 소비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고 또한 그 실효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총액 가운데 지방세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 36.4% 수준을 50%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이나 소득과세를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여지도 있지만,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절실하다는 결론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

자면, 위 <표 1>에 나타나는 소비과세 구성비 14.0%의 비중을 적어도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多消費時代에는 소비세가 직접세보다 收入安定性이 보장되는 조세일 뿐만 아니라 그 稅收伸張性도 크게 나타나는 조세이다. 그리고 대중의 소비는 전국에 걸리는 『廣域性消費』라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地域性消費』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소비세제는 국세로서만이 아니라 『消費連繫性의 原則』에 따라 지방세로서도 제도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존의 국세세목인 소비세 세목을 상당부분 지방세로 이관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액이 자주재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0% 정도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지방세 세수

논 단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액이 국세의 그것에 비하여 4분의 1 수준 밖에 아니되는 구조적 모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의 세수구조 상에서 재산과세액과 소득과세액 및 소비과세액이 상당한 정도로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현행 地方消費稅制의 構造的 問題點

1. 현행 지방소비세의 세목구성과 개선 가능성

현행 지방세제 중에서 지방소비세제에 속하는 세목으로서는 ①담배소비세

②경주·마권세 ③주행세 ④도축세를 들 수 있다. 이들 세목의 세수액이 지방세 예산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다음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우선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비교적 세수비중이 높은 편이다.¹⁶⁾ 이에 비하여 나머지 세목들의 세수액은 보잘 것이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들 소비세 세목들의 세수목표를 상향조정하는 세계개편을 시도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소비세는 ‘한미담배양해록’

<표 2> 현행 지방소비세 세목의 세수구성비

(단위 : 억원, %)

| 항 목 | 금 액 | 구성비 | 소비세의 구성비 합계 |
|-----------|---------|--------|-------------|
| 지방세 예산총액 | 234,748 | 100.00 | 14.51 |
| 담배소비세 예산액 | 22,513 | 9.59 | |
| 경주마권세 예산액 | 5,563 | 2.37 | |
| 주행세 예산액 | 5,505 | 2.35 | |
| 도축세 예산액 | 473 | 0.20 | |

자료 : 『豫算概要(2001)』중 2001 租稅規模(地方稅·國稅)

16) 『豫算概要(2001)』중 2001 租稅規模(地方稅·國稅)의 분석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의 예산액은 종합토지세 12,175억원이나 자동차세 19,005억원보다 더 많다.

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을 뿐더러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세가 행하여져 왔으므로, 이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의 결과로 큰폭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부분적인 개선을 통하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약간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따름이다.¹⁷⁾

둘째 경주·마관세는 지방세의 '普 遍性의 原則'에 어긋나는 部分稅에 지나지 않는다는 특성도 있지만, 이것이 5개 市道에 국한되어 과세되며 또한 전체 세수의 60% 정도가 경기도에서 확보 되는 세목이므로, 지방소비세제의 세수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분담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조세이다. 그러므로 이 세목의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셋째 주행세는 현재로서 지방세계의 고유한 소비세 세목이 아니라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할애하여 그 세수액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세이므로 현행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기대를 크게 가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현재 교통세의 11.5%를 주행세로 이전하는 방식의 제도이므로, 이 비율(법률 상으로는 세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¹⁸⁾

넷째 도축세는 현재까지 줄곧 그 세수액면에서 보잘 것이 없는 세목이었다. 그렇다면 도축세를 크게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축산정책이나 소비자보호 등의 차원에서 도축세를 크게 올리는 세제개편을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미 과세되고 있는 위 세목들에 관하여 제도개편을 통한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상당한 정도의 개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세수증대의 효과는 위에서 논의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모색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차선책을 찾을 도

17)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이 책의 원유희교수의 글을 참조할 것.

18) 이 세율 11.5%를 대폭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교통세를 지방세로 완전히이관하는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새로운 지방소비세 세목의 신설 가능성

기존의 지방소비세 세목에 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충분한 세수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다른 종류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에게 지역별로 부과하는 觀光稅나 환경시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도록 하는 環境稅 같은 신세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租稅環境을 감안할 때 새로이 세목을 신설하는 일이란 대단히 어려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신설이 가능하더라도 충분한 세수확보가 보장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세목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나라 국민부담으로 감내할 수 있는 소비세 부담분 중에서 국세로서의 징수분이 너무 많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즉 <표 1>을 보면 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및 주세 등의 소비과세로서 전체 국세수입의 53.7%나 된다. 그 다음은 소득과세로서

3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과세가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6%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국세 중 소비과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할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이하에서는 지방세 중 소비과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 국세 중의 일부 세목 또는 세목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세수증대효과는 적더라도 현행 제도의 개선도 병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오히려 현행제도의 개선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있는 제도의 개선이 손쉽고도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IV.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을 위한 基本構想

1. 개선의 기본방향과 그 평가

자치재원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 지방재정 재원규모를 키우면서 그 재원구조를 자주재원의 확대구조로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방소비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그 세수규모를 양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제도개편과 「地域的 消費連繫性」을 살리고 또한 應益原則에 부합할 수 있는 소비세 세목이 적절히 배합되도록 함으로써 그 세수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는 후자의 개선에 의하여도 기대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들 양자는 궁극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여하간에 전자의 제도확충과 후자에 의한 구조개선이 다같이 어우러져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개선의 기본방안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제도를 확대 또는 조정하는 방안과 新稅目을 개발하는 방안 및 내국세 세목의 일부를 지방세제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 가운데 첫째의 방안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소비과세 세목의 課稅基盤을 넓히고 과세표준을 확대하도록 하며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 방안을 통한 세수증대효과는 지방소비세의 세수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전술 참조). 둘째의 방안은 理想은 좋지만, 새로이 발굴할 수 있는 숨어있는 세목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의 방안만이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또는 공동세)로 이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논란에 대하여 세원의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논리가 있다. 물론 이 반대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나 다소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財政責任性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면에서 이 개선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2.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이관문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세 중의 일부 세목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제도개편이 선택가능한 최선의 해결방안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세목을 어느 정도로 이관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한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19) 담재소비세 및 경주·마권세의 개편방안에 관하여는 이 책의 원윤희교수의 글을 참조할 것.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현금취급업종(음식점, 주점, 부동산임대업 등)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려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²⁰⁾ 둘째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돌려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²¹⁾ 셋째 교통세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본격적인 주행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²²⁾

3. '지방소비세'의 신설문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목으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현행 지방세 세목의 어느 하나로 통합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론되는 과제이다. 이 경우에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이전하는 경우에 그것마저 흡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²³⁾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할 경우에 그 세목을 지방소비세로 통합하지 않고 '지방특별소비세'로 하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목에는 현행의 도축세 등을 통합흡수하는 방법 또는 주세의 일부(예컨대 탁주와 약주에 대한 주세)까지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V. 結 論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도

20) 이에 관하여는 權康雄 : 『地方稅의 課題와 發展方向』(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개원 1주년 심포지움 : 『2001년도 한국조세정책의 운영방향』(발표자료) 84-85면 참조. 특히 자세한 내용은 『稅制改編方案』 302-312면 참조.

21) 이에 관하여는 이책의 오연천 교수의 글을 참조할 것. 그리고 특히 자세한 내용은 『稅制改編方案』 294-298면 참조.

22)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일반 주행세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의 주행세를 전제로 한 새로운 논의가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3) 주20) 참조.

24) 주21) 참조.

논 단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정치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자금의 뒷받침은 원활한 지방자치에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財源規模를 키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의존재원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재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도록 하는 족쇄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財源構造 면에서 자주재원의 비중이 커지도록 하는 재원규모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자주재원의 비중이 커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이나 지방채를 늘리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결국 지방세의 세수액을 늘리는 제도개선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소득과세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더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 보여진다.

소비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소비세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기존의 지방소비세제에 속하는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 그리고 주행세 및 도축세를 개편하여 세수증대를 꾀하는 방안은, 비록 합리성은 있을지라도, 그 효과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는 여건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별다른 묘책이 없는 상황적 한계성을 지니므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국세 중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관시키는 개선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및 교통세를 이관하는 방법을 쉽게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이근식 · 송쌍중 · 원윤희 · 최명근
· 최용선 : 『稅制構造 改編
方案에 관한 研究—서울市
稅制를 中心으로—』(서울市
立大學校 産業經營研究所,
1996)

[약칭 : 『稅制改編方案』]

行政自治部 : 『地方自治團體 豫算
概要』(行政自治部, 2000)

[약칭 : 『豫算概要(2000)』]

行政自治部 : 『地方自治團體 豫算
概要』(行政自治部, 2001)

[약칭 : 『豫算概要(2001)』]

權康雄 : 『地方稅의 課題와 發展

논 단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 | |
|----------------------|----------------------|
| 方向』(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 | 『地方稅』~2000/제5호) |
| 학원 개원 1주년 심포지움 : | 오연천 :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 |
| 『2001년도 한국조세정책의 운 | 성과 기본방향』(韓國地方財 |
| 영방향』(발표자료) | 政共濟會:『地方稅』~2000/제5 |
| 김대영 :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 | 호) |
| 방안』(韓國地方財政共濟會: |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時效(시효)

일반적으로 消滅時效와 取得時效를 총칭하는 말로서 金錢債券의 消滅時效期間은 關稅法(\$25) 勤勞基準法(\$95) 등에서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年이다(國稅基準法 \$26, 地稅法 \$30의2).

時效의 中斷·停止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고(國稅基準法\$27Ⅱ, 地稅法\$30의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民法 第174條의 규정에 不拘하고 時效中斷의 效力이 있다(國稅基本法 \$28, 地稅法\$30의6).

- 편집실 -

특 집

지방소비세제의 활성화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이 영 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의 신장성이 취약하므로 소비 또는 소득과 관련된 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조세학자 또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소비과세의 비중이 1995년도에 전체 지방세수의 15.7%이던 것이 1999년도에는 14.0%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중 소비과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세목은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 그리고 2000년부터 도입 및 시행된 주행세를 들 수 있다. 담배소비세는 잘 알려져 있듯이 종량세형태의 2단계 정액세율체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담배양해록에 의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비과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올해 한갑당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오르긴 했지만 선진 외국의 경우에 비해 담배세율은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경주마권세는 신장성이 좋은 소비과세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국한되어 있다.

지방의 주요 소비과세 중에서 주행세

는 가장 바람직한 지방세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도입목적이 주행세 원래 성격보다는 자동차세율인하로 인한 세수보전차원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방의 소비과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할 수 있다. 주행세가 도입되던 2000년도에는 교통세의 3.2%로 그야말로 한미통상압력에 의한 대형차량세율의 인하에 해당하는 세입보전분만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2001년도도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상향조정되기는 하였지만 역시 세수부족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즉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인 1,624억원과 에너지세계 개편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버스, 화물 등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그 재원인 1,861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행세의 세율을 올린 것이다. 2000년도에 주행세를 지방세로 도입한 것은 지금의 실제적인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 상당히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도축세가 소비과세로서 분류되고 있지만, 도축세는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조세

보다는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소비과세로서 바람직한 세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세목이다.

지방의 소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까지 살펴본 소비과세는 지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소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중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방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소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왜 지방의 소비과세가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 외국의 소비과세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II. 지방소비과세 확대의 필요성

1. 확대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방의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주행세, 도축세의 4개 개별세목이 있지만 4개의 세목 모두 아직 소비과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의 국세와 지방세의 소비과세 비중이 잘 설명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국세의 소비과세는 53.7%를 점하는 데 비하여 지방세의 소비과세는 14.0%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4개 세목은 명목적인 소비과세일뿐 진정한 소비과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세목의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진정한 소비과세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지방세체계내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내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오연천(1998)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는 지방세에 비해 약 4.13배나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국세는 지방세에 비하여 3.27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동의 성과가 지방세수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활동 또는 소

비활동과 관련된 세원을 지방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지방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다.

국세의 소비과세 중 한 세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국세 총액의 약 25%정도인 238,434억원(2001년 예산기준)인데 이 규모는 지방세수 총액인 234,747억원(지방교육세 제외시 204,980억원)과 거의 동일한 규모이다.

지방소비과세의 비중을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역시 우리 나라의 소비과세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표 2>

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재산과세가 소득이나 소비과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소비과세 비중이 14.0%인데 비하여 미국은 22.4%, 그리고 일본은 19.8%로 우리 나라의 경우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지방세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방세수가 재산과세보다는 소득과 소비과세에 의하고 운영되고 있어 우리 나라보다는 세수의 신장성이 좋을 것을 알 수 있다.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만이 목

<표 1> 국세와 지방세의 성격별 구성(1999)

(단위: 억원, %)

| 구 분 | 국 세 | | 지 방 세 | |
|------|---------|-------|---------|-------|
| | 세 수 | 구성비 | 세 수 | 구성비 |
| 총 계 | 744,781 | 100.0 | 180,818 | 100.0 |
| 소득과세 | 252,200 | 33.9 | 24,549 | 13.6 |
| 소비과세 | 400,193 | 53.7 | 25,275 | 14.0 |
| 재산과세 | 19,185 | 2.6 | 104,052 | 57.5 |
| 기 타 | 73,203 | 9.8 | 26,942 | 14.9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개요』, 2000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0

<표 2> 주요국 지방세의 성질별 구성(1998)

(단위: %)

| 구 분 | 소득과세 | 소비과세 | 재산과세 | 기타 |
|-----|------|------|------|------|
| 한 국 | 13.6 | 14.0 | 57.5 | 14.9 |
| 일 본 | 47.2 | 19.8 | 31.1 | 1.0 |
| 미 국 | 40.4 | 22.4 | 4.4 | 32.8 |

자료: Revenue Statistics, OECD, 2000

적이 될 수는 없지만, 소비과세의 확충은 세수확보의 자율성과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차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 상황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의 지방소비과세의 개선을 통한 확충방법도 있으나 그 보다는 지방의 서비스와 연관된 소비관련 대상을 찾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은 세수의 신장성 결핍, 지방세수 총액 대비 비중의 취약 등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 보다는 조세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방세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방세로 선택된다면 그 세목은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는 국세의 소득분배와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는 지방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세로서 가장 효율적인 세는 재산세로서 지역의 가격기능 역할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Bird(1993)와 같은 학자는 재산세가 지방세로서 가장 적당하지만 지역주민의 세부담과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가 서로 연계만 된다면 소비과세 또는 소득과세 역시 지방세로서 적당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한 지역의 주민이 낸 소비세의 세수가 그 지역에 다시 귀속될 경우 효율적인 지방소비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부가가치세의 대상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임대업 중 음식업, 숙박업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세부담의 연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이 지방소비세의 대상이 된다면 조세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세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생산지원칙에 의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연계가 밀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그 경우 지방세의 과세대상이라면 효율적일 수 있는 조세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다른 과세대상은 몰라도 해당 지역의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업, 숙박업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는 지방의 소비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1977년 당시만 해도 유흥음식세는 지방세의 일부였던 것이 세수의 중립성차원에서 국세였던 등록세와 교환되면서 국세의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세수의 중립성 차원보다는 조세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조정하여 지방소비세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세계의 조세경향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예전에는 소득과악이 용이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중요한 조세였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세 또는 재산세 등이 중요한 조세로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세도 현재의 소비과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혜택과 세부담의 연계가 강한 소비관련 세목을 지방세로 확보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Ⅲ. 외국의 지방소비세 현황

1. 미국의 지방소비세

미국은 주정부에 따라 조세의 세율체

계와 과세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시 주정부에 따라 다양한 세목과 세율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공통적인 주요세목으로는 소비과세(consumption tax)의 일종인 판매세(sales tax)로 과세방법은 다르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에 해당하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5개 주¹⁾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정부 총세 수입의 약 50 ~ 60%가 판매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가 판매세 수입에 의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로 재산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 이후 부족한 지방재정을 재산세 수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세수의 신장성 확보 차원에서 세목을 다양화하는 방편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32개주의 6,431개의 county 또는 city에서 지방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표 3>은 미국 주정부 내 지방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체계이다).

1)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주는 뉴햄프셔주, 델라웨어주, 몬타나주, 알래스카주, 오레곤주임.

<표 3> 미국 주정부내 지방정부의 지방소비세 세율체계

| 주 | 세 율 | | 주 | 세 율 | |
|-----------------|------|----------|----------------|-------|------------|
| | 주 | 지방 | | 주 | 지방 |
| Alabama | 4.0 | 1-4.5 | Missouri | 4.225 | 0.5-1.25 |
| Alaska | - | 4.0 | Montana | - | - |
| Arizona | 5.0 | 0.5-2.0 | Nebraska | 5.0 | 1.5 |
| Arkansas | 4.5 | 0.5-1.0 | Nevada | 6.5 | 0.5 |
| California | 6.0 | 0.5-1.25 | New Hampshire | - | - |
| Colorado | 3.0 | 1.0-3.5 | New Jersey | 6.0 | - |
| Connecticut | 6.0 | - | New Mexico | 5.0 | 0.375-0.75 |
| Delaware | - | - | New York | 4.0 | 1.75-4.25 |
| Washington D.C. | 6.0 | 6.0 | North Carolina | 4.0 | 2.0 |
| Florida | 6.0 | 0.5-1.0 | North Dakota | 5.0 | 1.0 |
| Georgia | 4.0 | 1.0 | Ohio | 5.0 | 0.75-1.25 |
| Hawaii | 4.0 | - | Oklahoma | 4.5 | 2.875-4.0 |
| Idaho | 5.0 | 1.0-2.0 | Oregon | - | - |
| Illinois | 6.25 | 0.75-1.0 | Pennsylvania | 6.0 | 1.0 |
| Indiana | 5.0 | - | Rhode Island | 7.0 | - |
| Iowa | 5.0 | 1.0 | South Carolina | 5.0 | 1.0 |
| Kansas | 4.9 | 1.0 | South Dakota | 4.0 | 2.0 |
| Kentucky | 6.0 | - | Tennessee | 6.0 | 1.75-2.25 |
| Louisiana | 4.0 | 0.5-3.0 | Texas | 6.25 | 0.5-1.0 |
| Maine | 6.0 | - | Utah | 5.0 | 0.25-1.0 |
| Maryland | 5.0 | - | Vermont | 5.0 | - |
| Massachusetts | 5.0 | - | Virginia | 3.5 | 1.0 |
| Michigan | 4.0 | - | Washington | 6.5 | 1.3-1.7 |
| Minnesota | 6.0 | 0.5-1.0 | West Virginia | 6.0 | - |
| Mississippi | 7.0 | - | Wisconsin | 5.0 | 0.5 |
| | | | Wyoming | 4.0 | 1.0-2.0 |

자료: Significant Features of Fiscal Federalism, Vol. 2, ACIR, 1994

주: 지방정부의 세율은 동일한 주정부에서도 county 또는 city에 따라 다양함(현재 대부분 주와 지방정부의 세율은 상향조정되었으나 조세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음)

특히, 재산세 증가의 부담은 주민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져 1978년 캘리포니아주의 제안 13(proposition 13)의 채택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는 1975년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의 2%이내와 매해 재산가치평가액의 1% 이내로 인상폭이 제한되어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제안 13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 사이의 논쟁거리로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재산세 이외의 세수입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재산세 인상의 부담에 대한 저항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많은 주정부는 세율제한, 세수증가 한도, 과표인상제한 등의 재산세 인상억제를 위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정부는 재산세 이외에 세수신장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예로 미시건주정부는 교육구의 재원이 주로 재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재산세 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교육재원을 지방소비세인 판

매세와 담배소비세로 충당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레곤주는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으며, 위스콘신주는 교육재원의 부담을 종래의 지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전시키도록 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최근 경향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로 하여금 선택세(local option tax)를 도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²⁾ 선택세는 주 의회가 산하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세의 대상은 주로 지방소비세인 판매세와 이용세(use tax),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판매세는 더 이상 주정부의 고유한 세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낮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지방소비세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1997년 4월부터 도입되었는데 이는 1978년부터 “세제조사회 일반소비세 특별부회”를 구성하여

2) 류금렬, “외국의 세제”, 『지방세』, 제4호, 20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153.

오랜기간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3년부터 진행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둘째, 국세인 소비세도입시 지방정부는 부득이 소비양여세를 수용했지만 지방자치 이념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 일본의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 국가간 무역시 발생하는 소비세문제, 납세절차의 간소화, 납세순응비용의 최소화, 지방정부간의 세수입의 형평성, 배분기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결국 광역정부의 세목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다.

지방소비세는 종전의 국세 세율인 3%를 5%로 상향조정한 후, 이 중 1/5에 해당하는 1%를 지방소비세의 세율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광역정부의 세목이기는 하지만 도도부현에서 다시 시정촌에 세수를 안분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소비세 도입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지방소비세의 부담지역과 서비스제공

지역의 불일치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간의 안분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부담지역과 서비스제공 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세수출 등 비효율성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한 예로 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을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비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생산지에 의하면 지방소비세는 을지역으로 귀속될 것이고, 소비지에 의한다면 갑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와 물품에 대한 세부담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청산제도는 세수입을 징수한 지방정부와 지방소비세를 과세 받은 물품 등의 최종소비지를 관할 하는 지방정부가 일치하지 않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청산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소비세의 징수는 생산지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세수의 배분은 소비지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간에 받

3) 자세한 지방소비세도입에 대한 경위는 최명근,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사례연구”, 『지방세』, 제4호, 199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 25을 참고바람.

생될 세부담과 지역공공재의 차이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광역정부인 도도부현은 징수된 지방소비세 총액의 1/2를 시정촌의 인구수 및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다.

3. 유럽의 지방소비세

유럽 역시 국가에 따라 다양한 조세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Council of Europe의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세수입은 크게 재산세(개인과 법인), 소득세(개인이 주대상이나 법인의 경우도 종종 대상이 됨), 그리고 미국과 유사한 지방소비세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소득세는 스칸디나비아 주변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세원인 반면, 재산세는 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주요한 지방세원

이다. 지방소비세는 미국과 달리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세원배분방식에 의해 아주 중요한 지방정부의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다<표 4 참조>.

오스트리아 이외의 회원국 중에서 지방소비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로는 알바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의무적은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는 벨지움, 싸이프러스, 그리고 독일을 들 수 있으며, 세율의 조정이 상위정부에 의한 국가로는 에스토니아, 헝가리를 들 수 있다.

4.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앞에서 기술한 조세이론에 의한 접근보다는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확충차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았

<표 4> 오스트리아의 정부간 세원배분 비율

| 구 분 | 연 방 | 주 | 지 방 |
|-------|-------|------|-----|
| 소 득 세 | 60% | 22% | 18% |
| 유 류 세 | 88.5% | 8.5% | 3% |
| 부가가치세 | 69% | 19% | 12% |

자료: Local Financ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1997

다.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배경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나 공통적인 점은 지방소비세가 많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세원배분 방식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지역간의 격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청산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지방소비세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고 오랜기간 동안 논의를 거친 일본의 지방소비세 방식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IV.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1. 기본방향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의 신장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신장성이 좋은 소비과세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소비과세의 확충은 크게 세 가지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주행세 등의 기존 소비과세의 세율 또는 과표의 상향조정을 통한 방법, 둘째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통한 신세목의 도입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의 소비과세 중 일부의 지방이양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방법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개별소비세목이 나름대로 소비과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약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방법은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과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 관한법률」 제4조 중복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세원발굴에 의한 신세목의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마지막 방법인 국세의 소비과세 중 일부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의 소비과세 중에서 지방세수 총액과 거의 동일한 규모인 부가가치세 대상의 일부가 지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세 부담의 연관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가능 대상과 도입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도입방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국제총액의 약25%를 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방세 총액규모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큰 규모이다. 이중의 일부만 지방으로 이양되어도 지방세수의 확충효과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중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은 지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반대하는 일부학자는 복잡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행정비용의 과다와 지역간의 세수격차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일부학자들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유사한 형태로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Owen(1992)과 같은 학자에 의하면 조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세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대상을 독립세로 하기에는 징세행정비

용의 상승, 납세자의 협력비용 증대 등,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세원배분방식인 세원의 공유를 통한 방법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미국의 판매세 세원배분과 일본의 지방소비세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방식은 동일한 세원을 활용하지만 과세권은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과세방법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지방판매세방식이 도입될 경우 지역간의 소비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수의 편차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수는 생산지원칙에 의하고 세수배분은 소비지원칙에 의해 청산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소비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시 세율을 5%로 상향조정후 그 중 1/5인 1%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 대상 중 지방의 성격이 강한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원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원윤희(1994)는 특히 이들 업종에 대한 과세가 지역

의 특성으로인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들을 지방이 관장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한다. 김정훈(1997) 역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본의 지방소비세 형식으로 이양한다면 납세협력비용의 큰 변화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은 매입세액, 매출세액, 그리고 공제대상 등을 파악하는 데에 대부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이미 기존의 부가가치세를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권강웅(2001)은 세수증립차원에서 1977년 부가가치세의 도입당시 지방세로 되어 있던 유흥음식세와 교환한 등록세를 다시 국세로 전환하면서 그 세수규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본의 지방소비세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본식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우리 나라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며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도가 한번 도입되고 난 후 수정과 개선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이다.

한 예로 종합토지세가 10년전 정치적 논리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조세학자에 의해 문제점이 무수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대폭적인 개편은 아직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진정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훈,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안”,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류금렬, “외국의 세제”, 『지방세』,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 오연천,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지방세』, 제1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 원윤희,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 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 최명근,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사례연구”, 『지방세』,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Bird, Richard M.,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46,
No. 2, 1993.
Owens, J. “Financing Local Govern

ment,” in: Local Government
Economics in Theory and
Practice, D. King ed., (Rout-
ledge: London), 1992.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消費稅(소비세)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이다.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한다.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고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한다. 이 간접소비세는 부과·징수 방법과 과세물건(物件)의 차이에 따라 두 계통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관세(關稅)이고, 다른 하나는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인데, 관세는 다시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누어진다. 보호관세는 내국소비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재정관세는 주로 내국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내국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다.

조세객체(客體)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와 기호품에 대한 세, 응분소비품(應分消費品)에 대한 세가 성립한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立法例)를 보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필수품세는 그 폐지에 노력하여 비상시에만 과세하며, 기호품세가 소비세의 중심이 되고 있다(주세·연초세등). 응분소비품세는 인간이 자기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비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호품과 필수품과의 중간에 있는 소비품에 과하는 세가 된다(설탕세·직물세·물품세 등).

이상과 같이 소비세(특히 간접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물건의 제조자·판매자이지만, 그 세액이 물건값 중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실제 담세자는 소비자이다.

- 편집실 -

특 집

지방소비세제의 활성화

특별소비세부문의 지방세원화 방안

오 연 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I. 문제의 제기

국내 세원의 중앙·지방정부간 배분은 일정 시점에 있어 국세 체계와 지방세 체계의 형성 구도에 따라 고정된 양상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의 재조정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배분체계의 재편성 방향에 따라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정책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조정과 결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양상은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첫째로 행정사무와 기능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있어 「동등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세세원을 추가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직 그 시행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국세 세원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조세체계의 간소화와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체계의 재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즉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2001년 9월부터 진화세를 폐지하고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게 되며, 교통세의 본세(특별소비세)의 통합도 예고되고 있다. 현재 지방양여금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진화세와 교통세의 통합이 실현될 경우 지방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세 세원의 추가적인 지방 이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자동차 등록세의 폐지, 자동차세의 세율경감 등이 실현됨에 따라 상당 수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국세 세원의 추가적인 지방 이양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상기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대폭적인 개편, 특히 국세 세원의 추가적인 지방세 이양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앞으로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세 이양을 추진할 경우 그 핵심 대안의 하나로 소비과세의 근간을 이루는 부가가치세

와 특별소비세의 지방세원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 특별소비세의 지방세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소비과세의 지방 이양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논거

1. 응익원칙의 구현과 소비과세의 역할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익원칙을 기초로 한 지방세원의 확충과 보강이 필요하다. 지방세를 통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응익성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세로 배분된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세원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공해,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 집적에 따른 사회문제의 현재화 등 외부불경제효과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원이 국세로 귀속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 귀속주체간의 괴리현상을 야기하는 세목

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당해 지역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세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의 보전과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행위)에 대한 조세부과는 숙박업 및 음식점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입장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형태로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입장료 수입은 관광지의 단순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서비스 및 지역경제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특수부존자원, 관광자원, 오염원 등에 대한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체계로 흡수하는 것이 응익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관광지내에서의 입장·숙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경마장 등 입장행

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그리고 공업용수·상수도 용수 등 수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은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이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와 행정서비스 유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와 휘발유·경유·LPG 등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세원의 일부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주의」(residence principle)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로서는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리, 일시적·계절적 이동 등에 따른 거주지역과 지방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편익지역이 괴리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산과세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 체계에 의하면 주간에 유입인구가 많은 대도시 자치단체의 경우 이들 유입인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상응한 비용분담을 지방세를 통해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광자원이나 관광행위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에 누리는 지방행정서비스의 편익이나 지방행정비용

유발에 상응하는 경비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 체계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세원중에서도 소비과세가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제 세원으로 배분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원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음식업분과 도소매업분, 그리고 특별소비세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응익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과세균형의 확보와 소비과세의 역할

지방정부의 조세체계를 현재와 같이 재산과세 위주로 구축할 경우 특정 세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증폭되고,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 및 이윤, 소비, 재산 등의 과세 배

이스를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있는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는 재산과 세 위주로 과세 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관계로 지방 재정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소득, 소비, 재산 등의 과세 베이스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관계 구축과 소비과세의 역할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도세와 시군세)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에

비해 4.13배나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의 3.2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소매 소비자용품업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오히려 지방세 수입과 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방세보다는 오히려 국세 수입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활동과 관련된 소비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및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소비과세의 역할

우리 나라도 지난 2000년부터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접하는 비율이 7%를 상회하게 되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전개가 지방재정부문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수요가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세분화된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결과 선택적 서비스가 지방행정서비스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과 비용부담의 괴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상생활권의 확대, 관광·스포츠·여가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에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당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타 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누출효과(spillover effect)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된다.

응익과세를 중시하는 지방세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편익과 비용부담분리를 시정하여 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세원중에서도 소비과세가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납세의무지원칙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이와 함께 「부담없이 수익없다」는 귀속지원칙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귀속지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소비과세 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특별소비세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평가

1. 특별소비세의 일반적 성격

특별소비세는 1977년 소비세제 개혁시에 신설된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우리 나라 소비세제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소비세는 특정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선택적 소비 과세(selective consumption tax)라는 점에서 일반적 소비과세로서 소비지출을 보편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완전히 구분된다.

특별소비세는 특정 소비(예: 석유류 소비)를 억제하거나 특정 소비활동(예: 유흥행위와 석유류의 소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등 규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탄력적인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산업의 진흥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이러한 특별소비세의 성격 중에서도 지방이양 대상 세원으로서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점은 특별소비세는 사회적 비용 또는 외부불경제를 창출하는 특정 소비행위에 부담을 안겨 줌으로써 그러한 소비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러한 외부불경제 창출행위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특별소비세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평가

일반적으로 소비과세는 지방정부 차

원에서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다 지방세로서 우수한 면이 없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주분리 및 교외화 현상의 확산, 이동성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응익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세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운행이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와 행정서비스 유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응익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휘발유·경유·LPG 등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세원을 지방세로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업자, 판매자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 등이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하다는 세무행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소비과세의 지방세 수용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인정된다.

이처럼 특별소비세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응익원칙의 구현과 지방세의 과세균형 확보, 그리고 세무행정상의 편리성 등 바람직한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경우 세원분포의 보편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으로서 보편성과 응익성이 충돌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보편성보다는 응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점을 크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IV. 특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지방세 수용 방안

1. 지방세 이양 대상 세원

현재 특별소비세는 제1호·2호(사치성물품), 제3호(승용자동차), 제4호(석유류) 등 특정한 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지방세 이양 대상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대상 세원은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장소(경마장, 투견기 시설장소, 골프장, 경륜장, 카지노)와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이다.

2. 특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지방세원화를 위한 접근방법

특별소비세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수용할 경우, 이를 세원분리방식을 통해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세원공동이용방식을 통해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안이 달라지게 된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과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원분리방식을 통해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분할하여 이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이동성이 증대되고, 수평적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외부효과가 다양하게 노정됨에 따라 세원공동이용방식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소비과세를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정부단계별로 엄격하게 분리해서는 안되고, 조세의 외부성을 통제하면서 세원을 공유하는 접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특별소비세 세원 중 지방세로서

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세원의 특성에 따라 세원분리방식과 세원공동이용방식의 적용 가능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국세로서의 적합성은 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만이 높게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세원분리방식에 따라 완전히 지방독립세로 이양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에 비해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동시에 국세로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공동세방식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 중에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전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석유류 관련 특별소비세는 후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특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지방세원화 방안

(1)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독립 지방세목화 방안

과세장소(경마장, 투전기 시설장소,

골프장, 경륜장, 카지노)와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이를 국세에서 분리하여 독립 지방세목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들 세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와의 수익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해당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크게 유발하고 있는 시설들이며, 세원의 관리 및 징세행정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독립 지방세목을 신설하여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함께 관광지내에서의 입장·숙박행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묶어 이를 관광세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세원들을 분리하여 가칭『관광세』를 신설할 경우 응익원칙과 징세행정의 편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세목은 광역지방정부 또는 기초지방정부의 세목으로서의 적합성을 공히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세의 신설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입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조세경쟁 등 조세의 외부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2)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공동세 원화 방안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는 국세와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을 공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는 공동세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즉 교통세의 경우 이미 1999년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주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이를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주행세는 교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방정부간 세수 배분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수입을 배분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세수배분방식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원래 휘발유, 경유 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수입의 지방세 이양 구상은 자동차의 도로이용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세원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할 때 주행세의 세수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원칙을 수용하여 광역지역단위의 전년도

유류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휘문·이삼주(1998)의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교통세의 세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보다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주행세의 세원과 직접 관련된 세수입을 징세지주의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효율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관광객, 교외거주자의 출퇴근 등 유동인구의 타지역 도로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편익의 누출효과와 교통혼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도로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류판매량을 세원배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재정(조세)의 외부성을 교정하는 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행세는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시적 목적세로 신설된 교통세를 공동세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행세는 (도단위 수준에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교통관련 투자재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를 적정비율로 할당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자동차이용과세 강화, 보유과세

완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이 계속 단일세율화를 요구할 경우 자동차 관련 보유과세의 세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행세의 세수 규모가 확대되면 주행세의 세수 배분을 광역과 기초지방정부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주행세가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공유세원으로 전환될 경우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세수는 해당 지역별 유류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에 주행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초지방정부단위에서는 유류판매량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 조세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교통세를 본세인 특별소비세에 통합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방식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응의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과세균형의 확보, 추가적인 지방세원의 확충 등을 위해서는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가 불가피하다.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와 관련하여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도 이를 지방독립세목 또는 공동세방식의 형태로 지방세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소비세 중 과세장소·과세유종 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이를 국세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지방세목(가칭 관광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이를 공동세방식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은 이미 1999년의 주행세 신설을 통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주행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나머지 공동세를 통한 소비과세 지방세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행세의 지방정부별 배분기준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

한 자동차세 수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도로이용에 따른 원인자부담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도입된 주행세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행세의 광역지방정부별 배분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유류판매량 비율을 세수배분 기준으로 적용하고, 광역지방정부에 배분된 세수의 일부를 기초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

등록대수를 배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관련 보유과세의 경감 등을 감안하여 주행세 세율의 상향조정이 요망된다. 아울러 앞으로 조세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교통세를 본체인 특별소비세에 통합하더라도 현재의 공동세방식을 통한 중앙·지방정부간 세원공유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納稅義務의 承繼(납세의무의 승계)

租稅는 그 擔稅力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써 납세의무자의 個別性이 강조되므로 합부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租稅債務의 임의의 이전은 租稅行政을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履行能力이 없는 데로의 이전은 租稅回避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되어 조세징수의 확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地方稅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合併(地稅法 §15)과 相續(地稅法 §16)에 대하여만 納稅義務의 承繼를 인정하고 있다.

- 편 집 실 -

특 집

지방소비세제의 활성화

현행 지방세 소비세부문의 발전방안

원 윤 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지방세의 소비과세 개편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내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소비활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표 1>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체계 내에서 소비과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수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소비과세 개편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지방세 소비과세의 개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의 신설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신설의 당위성과 방안 등에 대해서는 오연천(2000) 등과 함께 본호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의 개편논의는 지역적인 특성이 강한 소비활동에 의해서 지역에 유발되는 제반 외부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수

단으로 소비과세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스키장, 카지노 등에 대한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그러한 입장행위들이 지역적인 외부효과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 과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행 지방세 체계내에서 소비세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담배소비세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지방재원 확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세 전환 등 그에 대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세의 여러 소비세목 중에서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특히 시·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세목이지만 그 세수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활동과 관련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마권세의 경우 세수의 편중성이나 마권구입이라는 사행행위에 대한 과세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온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본고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소비과세 분류상의 논의와 함께 관련세목들의 세수변화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편방향을 제시하며, 제4절에서는 경주·마권세의 개편방안을 살펴보고, 제5절에서는 논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II. 지방세 소비과세의 내용과 세수변화

현행 지방세 체계내에서 통상 소비과세로 분류되고 있는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 도축세, 그리고 주행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도 일정부분 소비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재산

<표 1> 소비과세 세목별 세수현황

| 연도 | 세 액 (억원) | | | | 세수비중 (%) (지방세 전체 세수대비) | | |
|------|-----------|-----------|-----|---------|---------------------------|-----------|-----|
| | 담배 소비세 | 경주 마권세 | 도축세 | 지방세 계 | 담배 소비세 ¹⁾ | 경주 마권세 | 도축세 |
| 1988 | 3,096 | 148 | 178 | 31,000 | 10.0 | 0.5 | 0.6 |
| 1989 | 14,130 | 195 | 174 | 49,608 | 28.5 | 0.4 | 0.3 |
| 1990 | 15,718 | 565 | 178 | 63,674 | 24.7 | 0.9 | 0.3 |
| 1991 | 16,469 | 801 | 218 | 80,351 | 20.5 | 1.0 | 0.3 |
| 1992 | 17,273 | 967 | 225 | 94,622 | 18.3 | 1.0 | 0.2 |
| 1993 | 17,454 | 984 | 263 | 110,261 | 15.8 | 0.9 | 0.2 |
| 1994 | 20,450 | 1,768 | 299 | 132,309 | 15.5 | 1.3 | 0.2 |
| 1995 | 21,519 | 2,170 | 339 | 153,160 | 14.0 | 1.4 | 0.2 |
| 1996 | 22,548 | 2,947 | 379 | 173,947 | 13.0 | 1.7 | 0.2 |
| 1997 | 22,365 | 3,607 | 472 | 184,057 | 12.2 | 2.0 | 0.3 |
| 1998 | 22,676 | 3,294 | 482 | 171,497 | 13.2 | 1.9 | 0.3 |
| 1999 | 20,882 | 3,936 | 457 | 185,862 | 11.2 | 2.1 | 0.2 |

주 1) 1988년의 경우 담배판매세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과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동시에 도로사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과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 7월부터 적용되는 현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감에 있어서 12년 이상 경과한 차의 경우 실제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자동차세는 전액이 아닌 5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록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도로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데 대한 과세로서 소비과세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은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 도축세의 연도별 세수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판매세이던 1988년에 비해서 도입 첫 해인 1989년의 세수는 규모상으로는 4.6배, 전체 지방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10%에서 28.5%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담배소비세의 세수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절대적인 세수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배소비세와는 다르게 경주·마권세의 경우 그 세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989년 전체 지방세의 0.4%에 불과하던 세수비중은 1999년의 경우 2.1%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담배소비세의 개편방안

1.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가. 지방재정 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 저하

담배소비세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설되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세, 전매익금, 방위세, 교육세 등 담배관련 모든 세목과 재정세입을 통합하는 것으로 소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권련의 경우 20개비당 360원의 종량세율로 도입되었으며 대통령령에 의해서 30%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가 설정되었다.¹⁾

1) 이러한 담배소비세의 성격이나 세율구조는 1988년에 체결된 「담배(권련)시장 접근에 관한 한국과 미국정부간 양해록」에 의해서 사실상 그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해록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담배소비세의 목적은 초기에는 충실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입 첫 해인 1989년에는 그 세수비중이 28.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군 지역의 경우 그 비중은 67%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담배소비세 등의 도입에 따라 전체 조세에서 점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12%에서 18%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담배소비세의 세수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1999년의 경우 전체 지방세수의 11.2%까지 낮아졌으며, 군지역에서도 그 비율은 34%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물론 금연의 확

산에 따라 담배소비증가율이 저하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²⁾ 종량제 체계로 설정되어 있는 세율구조로 인하여 담배가격 인상이 세수 증가로 직접 연계되고 있지 않은 것도 이유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흡연조장적인 세수배분방식 및 낮은 가격 수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시·군에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해 시·군에서의 판매량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판매량을 기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입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담배에 적용되는 종량소비세를 도입하며, 종량소비세액은 1000본당 23,000원 (즉 20개비 한 갑당 460원)이다. 다만 소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하여 보다 낮은 세율의 소비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담배소비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 모든 세금과 재정세입을 대체한다.

③ 담배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0으로 한다.

한편 1996년 교육세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에 담배양해특에 대한 수정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정부는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1995년 8월 25일 수준보다 30%~50% 인상한다. 이와 함께 내·외산담배 모두에 대하여 1000개피당 1000원의 공익사업 기부금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세와 기부금의 금액은 한국정부 재량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조세와 기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산 구분없이 모든 담배에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② 위의 규정들은 소매가격 200원 이하의 담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한국정부는 1998년 12월 3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1990년 4,699.6백만갑이던 담배소비량이 1999년에는 4,682.0백만갑으로 절대소비량이 0.4% 감소하고 있다.

준으로 하는 이러한 세수배분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히 담배소비세의 세수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사실상 흡연을 조장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연 이러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그

러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은 ‘이왕이면 우리 고장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우리 고장의 재정을 살찌우자’는 등의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왕 담배를 사려면’이라는 사항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만, 마치 담배를 소비하는 것이 애항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심

<표 2> 관련 가격의 국제비교(2000년 4월 1일 현재)

(단위: 파운드/값, %)

| 국 가 | | 소매 가격 | 상대 가격 (한국=1) | 총 세부담 | 세부담 비율 (%) | 일인당 GDP 비교 (한국=1) | | |
|-----|--------|-------|--------------|-------|------------|-------------------|------|------|
| | | | | | | 구매력 기준 | 환율기준 | |
| EU | 최상위 3국 | 영국 | 4.17 | 6.73 | 3.35 | 80.3 | 1.40 | 2.72 |
| | | 아일랜드 | 2.81 | 4.53 | 2.24 | 79.8 | 1.58 | 2.75 |
| | | 덴마크 | 2.50 | 4.03 | 2.01 | 80.4 | 1.65 | 3.70 |
| | 최하위 3국 | 그리스 | 1.25 | 2.02 | 0.91 | 72.5 | 0.93 | 1.34 |
| | | 포르투갈 | 1.05 | 1.69 | 0.83 | 79.7 | 1.04 | 1.26 |
| | | 스페인 | 1.01 | 1.63 | 0.72 | 71.4 | 1.14 | 1.70 |
| 일 본 | | 1.53 | 2.47 | 0.94 | 61.3 | 1.54 | 3.92 | |
| 미 국 | | 1.98 | 3.20 | 0.53 | 26.8 | 2.13 | 3.85 | |
| 한 국 | | 0.62 | 1.00 | 0.42 | 67.6 | 1.00 | 1.00 | |

- 주 1) ()안은 각국 화폐단위임.
- 2) EU 국가의 담배는 평균가격이나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가장 소비비중이 높은 제품을 기준으로 한 것임.
- 3) 미국은 1999년 기준임.
- 4) 환율: 1달러=1,190.67원(1999년 평균), 영국 1파운드=1,760.84원, 일본 100엔=1,077.10원 (이상 2000년 4월 1일 현재)
- 5) GDP 통계는 '99년 기준임.

자료: 영국 담배협회 (TMA), 일본 JT, 미국 (Orzechowsky and Walker)
 (박종규 외,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 (2001~2005)』, 한국조세연구원, 2000, p.81에서 재인용)
 OECD, OECD in Figures 2000.

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담배소비세의 세수배분방식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담배소비가 소비자의 부담능력이나 해당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 등 통상적으로 과세기준으로 인정되는 제반 사항들과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2>는 담배의 소비자가격, 조세부담 비율 등을 보여주고 있다. 담배의 소비자가격 수준은 우리 나라의 경우를 1로 할 때 영국이 6.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각각 3.20과 2.47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구매력을 기준으로 산출된 일인당 GDP는 우리나라를 1로 할 때 영국이 1.40, 미국과 일본이 각각 2.13과 1.54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우리의 담배가격은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담배가격 수준은 그 절대적인 규모나 일인당 소득에 대비한 상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금연촉진이나 세수확보³⁾를 위해서도 관련 세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 부담구조상의 역진성 문제

<표 3>은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내역과 전체 세입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는 종량세로서 관련 20개비당 510원이며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5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또한 폐기물처리비용 부담금과 국민건강진흥기금 부담금으로 각각 20개비당 4원과 2원이 부과되고 있다. 1999년 이후에는 제조원가에 이러한 조세와 부담금 등을 합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된다. 1999년의 세입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21,180억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33,532억원의 담배관련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담배에 대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종량세 구조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비싼 담배일수록 조세부담율이 낮아지는 역진성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3) 물론 세수의 증가여부는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탄력성에 좌우된다.

<표 3>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 종 류 | 세 율 (관련 20개비 기준) | 용 도 | '99년 징수액 (억원) |
|-----------|-------------------------------|----------------|------------------|
| 담배소비세 | 510원 ¹⁾ |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 | 21,180 |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50% ²⁾ | 교육재원 | 8,447 |
| 폐기물부담금 | 4원 | 환경개선특별회계 | 183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2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 91 |
| 부가가치세 | 원가에 위의 제세공과금을 합한 공급가액의 10% | 중앙정부일반재원 | 3,630 |
| 합 계 | | | 33,532 |

주 1) 2000년말까지는 460원임.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경우는 40원, 100원 이하인 경우는 영세율 적용.

2) 2000년말까지는 교육세로서 담배소비세의 40%임.

자료: 각 관련 법령

http://www.batkorea.com/korean/key/key_taxation.htm

<표 4>는 2000년과 2001년 현재 담배의 가격대별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담내역과 함께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이들 부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현재 소비자가격이 1000원인 담배의 경우 조세 및 부담금이 접하는 비중은 73.2%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1500원인 담배의 경우 그 비율은 51.5%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원가 등이 200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담배소비세와 교육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148원으로 1000원짜리 담배인 경우 14.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1500원짜리 담배에서는 9.8%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2. 개편방안

가. 개편의 기본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담배소비세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놓고 볼 때 담배소비세의 개편은 크게 세율수준의 문제와 세율체계의 문제, 그리고 자치단체간 세수배분기준의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

<표 4> 담배(권련)의 가격대별 조세부담 구조

(단위: 원, %)

| 연도 | 가격구조 | 1000원급 | 1100원급 | 1200원급 | 1300원급 | 1400원급 | 1500원급 |
|--------------|-----------------------------|--------|--------|--------|--------|--------|--------|
| 2000년 | 소비자가격(A)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 | 원가 등 ¹⁾ | 168 | 250 | 332 | 414 | 495 | 577 |
| | 담배소비세 | 460 | 460 | 460 | 460 | 460 | 460 |
| | 교육세 | 184 | 184 | 184 | 184 | 184 | 184 |
| | 국민건강부담금 | 2 | 2 | 2 | 2 | 2 | 2 |
| | 폐기물부담금 | 4 | 4 | 4 | 4 | 4 | 4 |
| | 부가가치세 | 82 | 90 | 98 | 106 | 115 | 123 |
| | 소매점 마진 | 100 | 110 | 120 | 130 | 140 | 150 |
| | 조세부담비율 ²⁾ (%) | 73.2 | 67.3 | 62.4 | 58.2 | 54.6 | 51.5 |
| 2001년 | 원가 등 ³⁾ | 168 | 250 | 332 | 414 | 495 | 577 |
| | 담배소비세 | 510 | 510 | 510 | 510 | 510 | 510 |
| | 교육세 | 255 | 255 | 255 | 255 | 255 | 255 |
| | 국민건강부담금 | 2 | 2 | 2 | 2 | 2 | 2 |
| | 폐기물부담금 | 4 | 4 | 4 | 4 | 4 | 4 |
| | 부가가치세 | 94 | 102 | 110 | 119 | 127 | 135 |
| | 소매점 마진 | 115 | 125 | 135 | 145 | 155 | 165 |
| | 소비자가격(B) | 1148 | 1248 | 1348 | 1448 | 1547 | 1648 |
| | 조세부담비율 ²⁾ (%) | 75.4 | 70.0 | 65.4 | 61.4 | 58.0 | 55.0 |
| (B-A)/A *100 | 14.8 | 13.4 | 12.3 | 11.4 | 10.5 | 9.8 | |

주 1) 담배의 소비자가격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소매점 마진 등을 토대로 역산한 수치임.

2)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과 폐기물처리비용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함.

3) 2000년의 원가 등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한 것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전제로서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조달수단으로서 적절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최근 중요한 이슈로 등장

하고 있는 금연확산을 위한 정책세제로서의 기능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담배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한미담배양해록은 우리의

과세주권을 현실적으로 크게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주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와 부담금은 국산과 외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종량세 이외의 세율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향후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조항들이 수정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양해록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 증가세 체계로의 개편

그 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담배소비세의 개편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세율체계의 증가세화를 통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세수의 가격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은 담배소비세의 세율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크게 증가세율 구조와 원가구간별 종량세율 구조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후자는 다시 세율수준이나 구간의 폭 등에 따라 세 가지 대안으로 구분하여 그 세수효과와 자치단체간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

로 장기적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체계를 증가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50원 단위로 구분하여 차등 정액세를 적용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면서도 원가별 세부담율을 증가세 체계와 유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세율구조상의 차이점은 발견되지만, 궁극적으로 원가가 싼 담배가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역진적인 세율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개편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담배양해록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입 확보 및 금연확산

향후 성인 10명중 1명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최근에는 이러

4)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는 연간 1인당 2만6451원, 여성은 2만7921원의 의료비를

한 폐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배규제를 위한 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등과 같이 정부가 금연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10%의 가격인상은 고소득국가에서는 약 4%, 그리고 중간 및 저소득국가에서는 8% 정도의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가격효과는 청소년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⁵⁾ 따라서 담배소비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서 흡연을 줄이려는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가격탄력성이 1을 넘지는 않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우리의 경우에도 담배관련 세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하여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배소비세 등 관

련 세금을 크게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물론 구매력으로 조정된 일인당 GDP 수준과 비교된 상대적인 가격수준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담배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비록 현행과 같은 종량세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담배의 가격대별로 나타나는 세부담의 역진성은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기준으로 할 때 가격이 1000원인 담배의 세부담율은 73.2%로 1500원인 담배의 51.5%에 비해서 1.42배로 나타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액을 46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그 비율은 1.23배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라. 인구에 따른 자치단체별 세수배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간에 세수를 배분하는

더 부담해 직접 치료비 증가만 연간 329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감소액,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 그리고 담배를 사러다니는데 따른 교통비 등을 합하면 올해 흡연으로 인한 손실액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아일보, 1999.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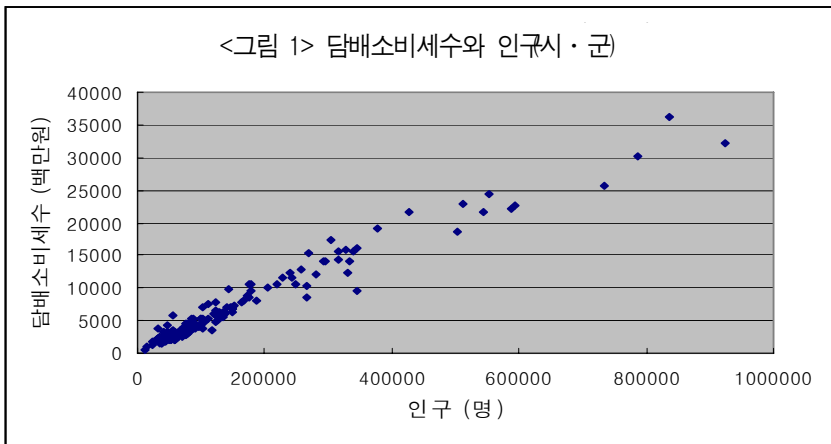
5) <http://tobacco.who.int/en/economics/index.html>

현행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담배소비를 조장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을 발생시키지 않은 배분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준으로서의 인구수를 들 수 있다.

<그림 1>과 <표 5>는 1999년 기준 담배소비세수와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양자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시·광역시와 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

로 하는 경우 그 상관계수는 거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의 경우 그 계수는 0.8877로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시와 군을 같이 분석하는 경우 그 크기는 0.9777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관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현재와 같이 판매량 기준이 아닌 인구수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기준으로 배분하더라도 그 결과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다소 큰 차이가 발생하는



<표 5> 담배소비세수와 인구와의 상관관계(1999년)

| 구 분 | 특별시·광역시 | 도 | 시 | 군 | 시·군 |
|------|---------|--------|--------|--------|--------|
| 상관계수 | 0.9996 | 0.9981 | 0.9722 | 0.8877 | 0.9777 |

경우도 있지만,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의 변화를 통해서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수입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IV. 경주·마권세의 개편방안

1. 경주·마권세의 특성

경주·마권세는 승차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마권 등의 구입이라는 측면에서 통상 소비과세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도 발견되고 있는데, 배준호(1997)는 마권세의 성격을 소비세와 소득세가 혼합된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마권을 구입하여 적중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환급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마권 구입액 전액을 소비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권구입은 환급금 지급을 예상하는 일종의 투자인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마권세는 소비세와 소득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마권세의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많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 중의 하나는 그 세율이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95년 이후에는 경마장 등의 소재지만이 아니라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도 일정한 세수가 배분되기 때문에 세원의 국한성 문제가 다소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5개 시도에 국한되고 있으며, 전체 세수의 2/3가 경기도에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보편성의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자치단체에만 세원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로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지역에 경마장이나 경륜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이 세수측면에 반영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진다.

필자의 의견으로 경주·마권세의 개편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과연 마권 등의 구입이라는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하며, 경마장이나 경륜장에서의 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의 과세방식이 적합한 것 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주·마권세의 개편방안

경마장이나 경륜장 등의 입장행위는 야구장이나 다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입장행위와 본질적인 내용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 경마장 등에 입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마등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야구장에서는 그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내기를 하지 않는 반면 경마장에서는 마권의 구입을 통한 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과세와 연계하여 본다면 입장행위 자체보다는 마권을 구입하는 행위가 사행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권구입에 대해서는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대신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체증 등의 외부효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반관련비용을 반영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주·마권세의 개편방안은 그 자체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 현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시설들을 포함하여 지역

적인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본고에서는 지방세의 소비과세 중에서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의 개편방안을 살펴보았다. 담배관련 세목의 경우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한미간의 담배양해록이 현실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금연확대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담배판매량에 비례하는 현행의 세수배분방식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담배소비를 촉진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배분기준으로서 인구수를 제시하였다.

경주·마권세의 경우 마권등의 구입이라는 사행행위에 과세되고 있는데, 이는 국세인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신 경마장을 포함하여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 지역에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각종 시설이나 장소에의 입장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2000년 제5호, 14-29.
 박종규 외,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 (2001~2005)』, 한국조세연구원, 2000.
 배준호, 「경주·마권세의 특성 분석을 통한 도박과세의 재검토」,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제12집

제1호, 1997, 85-104.

오연천,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 방향」, 『지방세』, 2000년 제5호, 4-13.

원윤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도의 개편방안」, 이계식·박완규(편), 『지방재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1998, 27-6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원 확충방안』, 2000.

http://www.batkorea.com/korean/key/key_taxation.htm

OECD, OECD in Figures 2000.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少額不徵收(소액불징수)

少額不徵收 제도는 免稅點制度가 징수비의 節次外에 零細負擔의 排除라는 이유로서 설치된 것이나 이 제도는 전적으로 徵稅費의 절감이라는 이유에서 설정된 것이다. 地方稅法에 있어서는 住民稅 所得割, 自動車稅, 農業所得稅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地稅法 §179, §196의8④, §208).

- 편집실 -

判例 및 審査 決定事例

- 大法院 判例 -

1. 2000. 12.8. 선고 98두11458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킨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수익자)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

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부과처분 최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재산세’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토지에 대한 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종합토지세’라고만 한다) 부과처분을 받고 1996. 12. 31. 이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1997. 7. 15.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 받고 1996. 12. 31. 이전에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원고는 늦어도 1996.12.31.에는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그때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7. 7. 15.에 한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산일을 그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상상의 소유자 명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다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등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등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서 1993.11.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박○○의 채권자인 소외 김△△가 원고와 박○○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3772호로 원고와 위 박○○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6.2.14.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1997. 4. 18.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더욱이 위 김△△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7. 5. 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 강남구 ○○동 467의 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와 인접한 같은 동 467의 7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지방경찰청 기동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6. 6. 1. 당시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위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날인 1996. 5. 30.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김○○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북쪽인 남부순환도로 쪽면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약 1,217㎡) 지상에 모델하우스가 건립된 상태로 사용중이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특별한 지

상장착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폐자재가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김○○가 같은 해 7월 22일 재차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위 5월 30일자 현장조사 때와 같은 상태로 위 모델 하우스가 그대로 있었고 방음벽 안쪽으로 땅이 몇 군데 파여져 있었지만 건축공사의 진척사실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체중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중인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收納機關(수납기관)

租稅 기타의 수입금을 受領하여 납부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수납기관은 원칙적으로 出納公務員이 되며 예외적으로 收納契約이 체결된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가 된다.

- 편집실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기초적 이해(Ⅱ)*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나. 목적사업과 후생복지사업과의 관계

법인의 목적사업에 구성원의 후생복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예식장업, 목욕탕업, 주유소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데는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동산인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수익금과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후생목적사업과 목적사업의 범위

‘신협’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요금 및 이용실태, 유사 목욕탕의 요금으로 보아 ‘영리목적’이어서 고유목적사업용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 안 됨(감심2000-64, 2000. 5. 2)

* 이 내용은 2000년 제6호(통권62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기초적 이해”의 연속 게재입니다.

[사례] 후생복지사업과 직접사용 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이 사무실 등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 사업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자부 세정 13407-1214, 2000. 10. 18)

- 후생복지사업에 사용여부의 판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라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사례] 구성원의 후생복지사업의 범위 판단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용객 대부분이 준조합원이고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까지 준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요금도 인근예식장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으로 보는 경우 일반인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행심2000-623, 2000.8.29.)

[사례] 채권보전용 부동산과 목적사업에 사용 판단

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신용사업 등 그 자체에 직접 사용위한 것이 아니고, 매각하여 미회수채권 충당목적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위해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 면제 안됨(행자부 심사99-183, 1999. 3. 31)

4. 직접 사용

가. 임대업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판단기준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첫째, 임대용 부동산은 소유주인 당해 법인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둘째,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지방세법상에서 『직접사용』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종과세 되는 것이며, 종교, 제사 등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유 주체가 직접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제3자로 하역금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의 해석 규정은 없으나, 비영리사업자나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거나 종과세하는데 여기서 그와 같은 과세 처분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쟁점 사항에 해당한다.

[판례]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구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94누224, 1994. 10. 28.)

첫째, 직접사용을 당해 부동산 소유 법인이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는 소유권자가 되고 그 객체는 해당 부동산이 되며, 사용용도 및 방법은 고유목적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권의 주체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하는 데 고유 목적이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둘째, 직접사용을 사용권과는 관계없이 『목적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사용권을 가진 주체가 목적사업에 공여하는 경우를 직접사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 고유업무만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되어 이를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직접사용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하는 경우의 직접사용과 비과세,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감면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사용은 소유주체가 직접 사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공여되는 것이라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체가 사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감면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여부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대판86누36, 1986. 7. 22.)

[판례]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여부 판단기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 3878호개정전)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간호

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그 학생들의 실습소로 이용하고 있고 위 병원은 영세민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 또는 감액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위 학교법인의 자체운영 및 학교의 유지,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면, 비록 병원건물이 학교법인의 정관상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원건물의 취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87누641, 1987. 10. 13.)

[판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판84누297, 1984. 7. 24.)

[판례]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92누4499, 1992. 11. 10.)

[사례] 임대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판단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한 후 임대한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 - 아 807, 1998. 10. 30)

[사례] 직접 사용의 범위판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음(국세청 법인46012- 648, 2000. 3. 8)

[사례] 임대용부동산의 사업용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의 판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13407-539, 2000.4.21)

-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볼수는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자산으로서 판단하여야 함.

[사례] 무상사용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판단

농업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축물을 건축한후 조합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용으로 위탁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판단됨.(행자부 세정13407-776, 2000. 6. 21)

[판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판단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97누10741. 1998. 5. 12)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부정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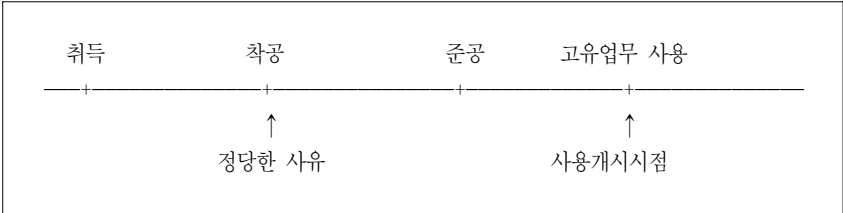
[사례] 임대와 직접 사용 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이 건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는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행자부 심사 99-185, 1999. 3. 31)

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사용개시 시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개시시점은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의 목적사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신청, 건축공사중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중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고유업무에 직접공여되는 시점부터 사용개시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5. 수익사업 : 범위와 제외대상

가.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며,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 (3) 교육서비스업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5) 연금 및 공제업종 다음 각목의 사업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6) 비생명보험업종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나. 수익사업 제외 범위

비록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

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사례]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자732 98. 7. 24)

다. 수익사업과 감면법인과의 관계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농협 등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에는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 수익사업이 목적사업인 경우 감면 판단

공공법인이 등기부상 당해 수익사업이 고유업무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대상임.(내무부 세정13407- 60, 1997. 1. 21)

6. 비과세 · 감면의 대상

가. 비과세 ·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비과세 · 감면대상법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 감면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재산』이라고 할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저당권, 전세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부동산』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기타의 권리

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 유치원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동산을 그 설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임(내무부 세정13407- 555. 1997. 6. 3)

[사례] 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범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나, 교회 공원묘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 4628, 1998. 10. 8)

[사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과세 범위 판단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30- 216, 1999. 2. 20)

또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취득세에서 판단할 때 지목변경이나 개축, 대수선과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에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이는 당해 부동산의 증가된 경제적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부동산전세권등기, 부동산저당권등기, 공유물분할등기 등에 대한 등기가 포함되는지와 등록세 비과세, 감면여부를 판단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감면하여야 타당하다.

[사례] 지목변경과 부동산 취득의 범위포함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한다면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대상

입(행자부 세정13407- 114, 1999. 1. 27)

[사례]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부동산전세권, 저당권의 포함여부 판단

다. 비과세 · 감면세목과 감면세액의 범위

지방세 비과세 · 감면대상 세목은 관련규정에서 규정된 세목 범위내에서만 비과세 ·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다른 세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병기 고지되는 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나 감면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례] 농특세 감면 판단

지방세법 제2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세액(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세액(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가액이 농어촌특별세액임(행자부 세정 13407-1031, 2000. 8. 21)

[사례] 도시계획세의 감면 판단

도시계획세는 비록 종합토지세 부과시 함께 과세되기는 하나 (이를 종합토지세와 병기하여 고지한다고 합니다) 종합토지세와는 독립된 별개의 세목이므로 구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되더라도 별도로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047, 2000. 8. 28)

[사례]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종중의 경우는 규약에 제사가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실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됨.(행자부 세정13407- 161, 2000. 2. 7.)

또한 비과세나 감면의 세액 범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범위가 결정되어 지지만 감면의 경우 감면세액을 근거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산출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면세액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50%감면대상 법인이 3배중과세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

[예시]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50%감면법인이므로 일반세율로 적용된 등록세를 10억원 산정되고 그 중 5억원은 납부대상, 나머지 5억원은 감면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의 산출방법과 세액은?

- ①등록세 납부세액 : 5억원 × 3배 = 15억원
- ②농어촌특별세 : 감면 등록세의 세액 5억원 × 3배 × 20% = 3억원
- ③납부세액 총액 : 15억원 + 3억원 = 18억원

[사례] 중과세액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표준산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은 같은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감면을 받는 등록세는 중과세액이 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감면을 받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516, 200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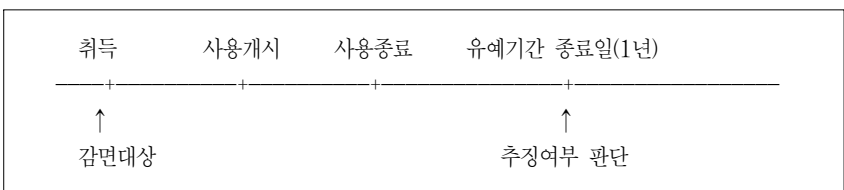
-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액이 감면세액이 되

는 것임

7. 추정요건과 유예기간종료일

통상적으로 지방세법상에는 비과세나 감면을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사용목적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세법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있다면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도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조문상 이를 살펴보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 하루라도 사용하고 매각하면 추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종료일 이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첫째, 유예기간내에 일부 사용하고 매각하는 경우 의 비과세 · 감면 추정판단방법은 비과세 · 감면받은 후 사용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비록 사용을 한 후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날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추정사유에 해당하여 추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추정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그 시점에서 적용할 규정에 의거 추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유예기간내에 일부사용하고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비과세 · 감면 추정 판단방법은 타인에게 일시 사용후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예기간 종료일에 이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추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고 유예기간 종료일이후에 매각,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판례] 취득세 등 추정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법률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정원인 사실의 발생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인 재산의 취득 당시 또는 추정원인사실 발생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93누15632, 1993. 11. 9.)

[사례] 유예기간내에 사용하다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비과세추정사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후 2년 6개월동안 당해 사업에 사용하다가 타 교회에 동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행자부 세정 13407-502, 2000. 4. 12)

- 비과세의 추정시기의 판단은 유예기간경과시점에 판단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경료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정대상이 되는 것임.

[사례] 취득세 등 감면이후 추정여부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행자부 세정13407-679, 2000. 5. 25)

8. 비과세 · 감면의 중복적용

가. 비과세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지방세의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을 받을 경우 비과세나 감면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우선 지방세법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감면을 받는 경우라도 중복감면을 할 수가 없으나,

비과세와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만 하고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감면을 모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적용순서는 비과세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규정을 나중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시] 취득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나, 납세자는 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에 기인한 보상금범위인 비과세 세액 300만원이 있고,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으로 취득세를 50%감면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와 감면규정의 적용방법?

① 납부세액 500만원 - 비과세세액 300만원 = 납부할 세액 200만원

② 감면세액은 비과세받은 후 납부할 세액 200만원의 50%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1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294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의 비과세 요건과 동법 제261조 규정의 감면요건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규정의 보상가액 범위내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50% 경감함.(행자부 세정 13407-지312, 1998. 5. 15)

나.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여부와 추정판단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2개이상의 감면규정의 의거 동일한 감면율에 의거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는 본세에는 그 감면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나 감면세액에 의거 납세하여야 하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 시도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거 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사업양수도로 인한 감면규정이 중복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면제규정이 중복적용되었으나 중복적용되는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규정(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비과세되고, 어떤 규정(사업양수도에 따른 감면)은 과세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규정(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복감면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별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요건의 성립요건이 서로 상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중복감면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복감면은 동일 사실에 대하여 감

면하는 규정이 2개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감면요건이 각각 상이하는 경우라면 이를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지방세법 제270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제1항규정에서 『국가유공자등에우뮓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시도세 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85제곱미터 이내의 공동주택을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은 대부금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감면이 되지 아니하나 대부금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대부금 초과부분이 있더라도 감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감면은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감면하라는 것이다.

[사례] 조특법에 의한 추정사유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사업용재산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득세·등록세 추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자부 세정13407-639, 2000. 5. 19)

- 사업양수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추정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 지방세 감면과 중복감면판단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는 사업장 전체를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1999년 12월 31일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금융기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동의를 얻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8조(기업의 금융부채 상환

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9조(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함. (행자부 세정13407- 91, 2000. 1. 22.)

다. 감면신청과 관련규정의 적용방법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잘못 감면신청을 하거나 추징하는 경우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감면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직권으로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법 제292조(감면신청)의 규정에 의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사례]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조항을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착오로 감면율이 낮은 조항을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행자부 세정13407-192, 2000. 2. 15.)

[사례] 감면신청과 지방세 감면판단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118 99. 1. 27)

9. 추정요건과 중과세 추정적용

가. 추정규정이 없는 경우의 중과세판단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을 한 후 유예기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정하여야 마땅하나 추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을 할 수도 없지만 중과세 추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에 따른 추정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과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감면만 하는 규정만 있고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요건에 해당되거나 중과세 추정을 위하여 우선 감면세액을 추정하는 추정규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나중에 추정요건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중과세로 추정되지만 일반과세로서 추정조항이 없어 일반과세로도 추정

이 되지 아니한다면 중과세로도 추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례] 기준면적 초과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1. 구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후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 8211, 8228 판결 참조).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 8019 판결 참조).

2.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그 중 그 지상건물을 예금취급소로,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 경우 원심스스로

위 부속토지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위 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된다고 하여 위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정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가 정한 추정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제된 취득세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판 98두 12949, 1999.10.8)

[사례] 비과세 법인의 취득세 추정기간

- 1)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 제110조 제1항 제2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세액이 추정됨과 동시에 취득세가 중과되고
- 2) 지방세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부터 30일 되는 날의 다음날, 추정사유가 발생하여 추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458, 2000. 4. 1)

[사례] 비과세추징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판단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의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만 하였을 뿐, 취득일부터 4년 6월이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와 마찬가지로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부 심사2000-108, 2000.2.23)

- 토지취득후 1(3)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거나 3년내에 교육용에 직접 사용않고 취득상태로 방치한 경우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나.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의 중과세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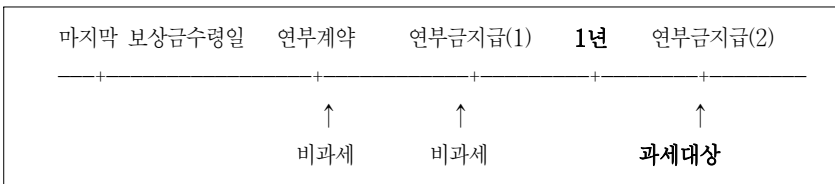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을 한 후 유예기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일단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중과세 추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중과세로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10. 연부취득과 비과세 · 감면범위

연부취득한 경우 지방세의 비과세 · 감면의 범위는 감면기간내에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의 비과세규정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는 경우(예를 들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는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와 감면규정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하는 경우(예를 들면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이 있는 바,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 기간을 두고 어떤 물건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기간이나 감면기간을 경과한 후에 연부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판단할 것인가로서 연부취득은 비록 최

종연부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형태의 취득이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매연부금 지급시 취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 연부금지급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고 비과세 또는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기간(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면기간(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여야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개시일의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은 연부취득의 경우 최종 연부금 지급일(최종 연부금 지급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을 말함.(행자부 세정 13407-786, 2000. 6. 22)

[사례]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의 취득감면

1.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및 과세 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대법원 '96. 1. 26 선고, 95누 13050 참조)이므로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서로 상이하게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경기도도세감면조례부칙(조례 제2806호, 1998. 5. 18로 개정된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9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1. 1 이후 1999. 12. 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

-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 일시급 또는 할부금에 의해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부칙(조례 제3504호, 1998. 5. 25 개정된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999.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2000. 1. 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1999. 12. 31 이전에 지급된 연부금의 범위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3407- 167 '99. 11. 18.)

11. 해석의 변경과 추정판단시기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이후 해석을 변경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시점은 해석을 변경한 이후의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 의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근거하여 지방세법령의 해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사례]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을 해석함에 있어서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신용사업과 관련된 부대업무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1998. 1. 30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심사결정(내심 제98-14호)에서 채권보전용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해석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 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 13430-434, 1999. 4. 13)인데도, 1995. 5. 17에 취득하고 1995. 8. 18 처분청이 감면 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에 대하여서까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라 하겠다.(행자부 심사 99-576, 1999.9.29)

- ‘농협’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신용사업관련 부대업무로 보아 취득 · 등록세 감면됐으나, 해석기준 변경으로 1998. 1. 30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IV. 과점주주의 비과세 · 감면적용

1. 과점주주의 비과세 · 감면의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의 적용부분은 납세자가 감면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 감면되는 지와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하여 비과세 · 감면되는 지에 대하여 견해가 발생되고 있다.

2. 과점주주의 의제기준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취득대상물건이 지방세법 또는 타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첫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은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취득물건이 취득세면세점(과표가 50만원)이하의 물건이거나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하는 물건(예: 존속기간이 1년미만의 가설건축물의 취득)인 경우에는 과점주주라도 비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감면하거나 비과세 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법인합병으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713 '94. 9. 28 참조)

②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주식 발행법인은 감면대상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을 간주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등을 공장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법인전환 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221, 96.2.24 참조)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산업단지에 최초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내무부 세정 13407-691, 97.6.28참조)

둘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은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상기의 논거와 같다.

②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법인에게 취득세를 그 물건에 대하여 감면을 한 경우라면 과점주주에게도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논거는 간주취득으로 의제 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여야 할 것인가? 과점주주는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과점주주도 창업한지 2년 인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 소유자산중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구지방세법('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동봉한 내무부 심사결정 제'97-99호, '97. 3. 26 참조) (행자부 세정 13430-290 99. 3. 10)-최근이 사례는 변경되어 적용하지 아니함.

[사례] 과점주주의 면제여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4호 및 제114조제3호 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법인 전환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0%전체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

13407 - 221, 96. 2. 24)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

구지방세법('94.12.31 이전) 제110조의3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해 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후 2년 이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내무부 세정 13407-1366, '96.11.27)

[감사심]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적용

당해 법인이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부동산 등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 위 단서의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된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운반구중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차량운반구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과점주주들에 대하여 이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건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계법령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고 공장용지는 구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함.(감심제349호, 1999. 11.23)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판단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지방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268- 5664, 1981. 4. 11)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AD주식회사가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세액만큼 취득세 감면을 받고 과점주주가 될 당시 그 감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규정의 취지에 따라 과점주주의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됨.(행자부 세정 13407 - 734, 2000. 6. 10)

V. 신뢰보호의 원칙적용과 비과세 · 감면규정의 개정

1. 신뢰보호의 원칙적용요건

지방세법의 법률관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③ 납세자의 경제행위 ④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가 발생된 경우 |
|---|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법률은 비록 과세요건발생당시의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조세법 논리로서는 타당하겠으나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비과세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 신뢰보호원칙적용의 일반론

1.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제6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97누11843, 1999. 7. 9.)

2. 비과세 · 감면규정의 개정시 적용법률

가. 과세권자의 공적견해의 표명여부의 판단

납세자의 비과세 또는 감면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무엇이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그 범위는 법령, 고시, 조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에 기하여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권자는 꼭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진 자만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지방세 과세부서의 협의를 받거나 협의를 받지 아니한 과세권자를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과세권자는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에 대하여는 협의여부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단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라고 하겠으며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 감면조례에 의한 신뢰보호와 감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있는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등의 원인행위가 개정된 법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가 시행되던 1992.8.13.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4.3.25. 이권 건축물공사에 착공하여 1997.12.31. 사용승인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원인행위가 모두 종전 조례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미 종전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행심2000-657, 2000. 8. 29.)

[사례] 사업의 승계와 면제 판단

사업시행인가당시에 시행되던 재개발구역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면조례가 과세요건 완성 전에 폐지된 경우에도 구감면조례 시행당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종전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명의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구감면조례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면제에 관한 권리 ·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행심2000-635, 2000. 8. 29.)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감면적용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역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 또는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함.(대판95누13746, 1996. 1. 23.)

나. 지방세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의 판단

지방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규정 부칙에서 ①적용기간을 명확히 두어 적용하는 경우, ②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예: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 세액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다.

①과 같이 적용기간을 명확히 두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도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②, ③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신뢰의 근거(경제행위)와 과세요건 성립시기 및 관련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볼 때, 보유과세는 경제행위하고 난 다음 법령개정이후 매년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감면규정의 엄격해석논리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과세요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되었다.

[판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신뢰보호원칙배제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8두15788, 1999. 9. 3.)

[판례] 지방세법에 의한 신뢰보호와 감면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가 같은 법 부칙(1994. 12. 22.) 제2조에 따라 1997. 12. 31.까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5. 8. 21. 대통령령 제1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위 원인행위시 발생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대판 97누201, 1998. 11. 13.)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不均一課稅(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의 일부에 대하여 不平等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租稅平等의 원칙에 反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最小限으로 限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세법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때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별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限하여 住民의 일부에 대하여 불평등한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地稅法 §7,8) 이를 施行하기 위해서는 必要事由, 賦課方法, 稅目 및 稅率 등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不均一課稅는 國稅에는 그 例가 없다.

- 편 집 실 -

判例 및 審査 決定事例

- 行政自治部 決定事例 -

1. 2001. 2. 27. 제2001-57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골프장의 개업비가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개업비로 계상한 일반관리부서의 임직원 인건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은 골프장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회원권의 판매 및 법인의 일상적인 경비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골프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소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8.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리 산 1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0.7.10.부터 2000.7.1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이건 골프장의 개업비등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액 8,228,663,24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3,315,230원, 농어촌특별세 89,220,560원, 합계 1,062,535,790원(가산세 포함)을 2000. 8. 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청은 청구인이 매년 납부한 종합토지세액 등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549,864,280원, 농어촌 특별세 50,404,220원, 합계 600,268,50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1. 1. 2. 결정결정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건 골프장 건설공사를 (주)△△에 일괄 외주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골프장 조성공사와 직·간접비용은 모두 공사비로 집행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기타

일부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현장 인건비, 코스관련인건비, 인·허가비용은 모두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건 골프장 건설과 관계없는 총무등 일반관리부서의 임직원 인건비, 종합토지세 등 체세공과금과 관리부서의 차량감가상각비, 회원권분양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개업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러한 개업비는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3

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판결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1999.5.18. 등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개업비등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업비는 골프장 건설과는 관련없는 비용인데도 골프장의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주)△△에 일괄 도급하고, 도급비용총액을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켰고, 1996년~1999년간 코스관리등을 위하여 이건 골프장에 투입된 청구인 소

속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총177,947,020 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별도 회계처리하여 이건 골프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킨 반면, 총무 등 일반관리부서의 임직원 인건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보험료,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광고전선비, 수선비, 잡비, 유가증권처분손실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전력비 등은 개업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개업비는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회원권 판매 및 법인의 일상적인 경비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골프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 2000-511호, 2000.6.27)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1. 2. 27. 제2001-70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환매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인에게 환매요청을 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시 환매특약등기를 하였으며,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지 요청을 환매권이 받아들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한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정으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5.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1673-3번지 공장용지 9,926.3㎡(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290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정 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486,959,740원)에 구지방세법(1998. 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7,652,700원, 농어촌특별세 24,534,820원, 등록세 53,530,540원, 교육세 9,813,920원, 합계 355,531,9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존 유가공 공장이 위치한 대전광역시 용문동 소재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1996. 4. 30. 대전광역시로부터 제4공단 공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나 고정투자비 과다 및 적자경영 등으로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1997. 1. 10. △△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유가공 공동사업 제의가 있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이건 토지보다 넓은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대전광역시 측에 더 큰 부지를 의뢰하였으나, 매수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충남 논산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에 대전광역시는 1997. 3. 14. 이건 토지를 환매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 제110조 제2호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수자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제2호가목에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2항제3호에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4. 30. 환매등기를 병행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입한 데 대하여 공공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 2. 7. 대전광역시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신청하여 1997. 3. 14. 대전광역시장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취득세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등을 들어 비과세 대상인 환매권에 의한 환매에 해당된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은 이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환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계약해제신청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한 것이므로 환매권에 의거 환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였음을 제출된 증빙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에 의한 환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는 그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4. 30. 대전광역시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전광역시장을 환매권자로, 환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환매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원금 해당액에 환매권 행사일까지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환매특약등기를 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신청(1997. 2. 7.)이 원인이 되어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당초의 매도자인 대전광역시에게 이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전광역시장이 계약해제가 아닌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환매와 달리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환매특약등기에 명시된 대로 반환금에 대한 5%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을 볼 때, 이건의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한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地方稅法令
質疑回信

- 行政自治部 稅政課 -

1.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 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임대개시 후 당해주택의 임대유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보존등기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은 바, 상기조항에 의한 의무기간내에 분양전환시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는지 여부?

회 신

시·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정되지 아니함.

[세정 13407-13, 2001.01.05]

2.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선박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여부

【질 의】

폐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서 금감위에 자산유동화계획을 2000.12.1. 자에 등록하고 그 등록된 계획에 의거 부동산, 선박, 기계장치 매립권등을 양수하여 2000.12.8.자에 자산양도등록을 필한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인 ○○메이저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을 양수할 때 선박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면제조항을 살펴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1994년 법 개정이후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선박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을 설>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

이기 위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때 취득·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 건설기계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194호)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제12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관련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아닌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세정 13407-14, 2001.01.05]

3.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업무용토지여부

【질 의】

'89.12.20 정부의 △△항 원양어업전용부두 축조 및 수산물유통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본회 및 다수 원양어업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개발사업담당회사인 ○○어업개발(주)를 설립하고 동개발회사에서 소관행정관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취득, 착공하여 공사진행중 본회 및 공동출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조성토지에 대해 준공전 사용허가를 얻어 본회는 본회귀속 허가면적에 수산물물류센타를 신축하여 사용중으로

- '90.10.31 : ○○어업개발(주)에서 매립면허 취득
- '91. 2.25 : 매립공사 착공
- '95.10.21 : 동개발회사에서 본회 및 2개 공동출자회사를 토지사용자로 하는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 취득

- '98.10.31 : 본회에서 수산물물류센터 준공
- '98.12.18 : 건설교통부에서 △△항매립지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유통 단지로 지정
 - 유통단지 지정후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280조)
- 2000. 2.21 : 동개발회사의 요청으로 매립면허조건 일부변경 허가 취득(동개발회사의 매립지 소유 및 공동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삭제)
- 2000.12.31: 준공 예정에 있는바

위의 경우 준공전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본회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가) ○○어업개발(주)가 본회 등 출자단체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매립토지를 분할하고 본회 등 출자단체를 토지사용자로 하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본회 귀속토지를 수산물물류센터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부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여하?
- 나) 만일 ○○어업개발(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회 등 출자단체가 준공전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 다)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본회가 사용중인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인지 여부? 당해 토지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준공하기 전에 유통단지로 지정된 경우 준공전 사용허가일 이후 준공공사인가일까지 증가한 취득가액의 취득세 과세여부?
- 라) 공유수면매립지중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항만시설, 도로 등)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법 여하?

회 신

1.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0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원양어업개발(주))가 원시취득자로 취득세 납세의무자

있고,

2. 질의 나)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규정에 의거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정관목적사업,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업무여부 등을 기준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3. 질의 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법률 제5474호) 제28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나. 이 경우 유통단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지정받기 이전에 취득시기(사용승낙일)가 도래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며,

4. 질의 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부채납시설을 별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유수면매립공사중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 총공사비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소요된 비용만을 별도로 구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총공사비를 당해 면적별로 안분하여야 함.

[세정 13407-22, 2001.1.8]

4.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질 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으로 이

전후 부동산 가액이 이전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는 바, 장부상의 기장 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의3제1항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의 이전전 토지 장부가액은 어떠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 장 부 현 황 -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원시취득(1970.1.1) : 10,000,000원
 이진후 공장용 토지의 1차 취득(1999.7.1) : 9,000,000원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재평가증액(1999.10.01) : 5,000,000원
 이진후 공장용 토지의 2차 취득(1999.12.01) : 1,000,000원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2000.02.01) 토지관련 부대비 안분액 1,000,000원

<갑 설> 이진후 공장용 토지의 1차 취득일 현재의 이전전 장부가액으로 판단함(1천만원. 1999년 7월 1일)

<을 설> 이진후 공장용지의 전체 토지취득이 완료된 시점인 1999년 12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함(1천5백만원)

<병 설>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이진후 공장 준공)시점인 2000년 02월 01일 현재의 금액으로 판단함(1천5백만원)

회 신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동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이전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귀문: 1999.7.1)을 기준으로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과 이진후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정 13407-20, 2001.01.08]

5. 폐기물 매립시설 비과세여부

【질 의】

○○회사장 보강공사 및 관련공사로서 ○○회사장은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충남도청에 허가 승인을 득하고 폐기물 매립 허가구역내에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회사장 보강공사 및 관련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회매립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자진납부신고하고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회사장 관련공사로 회이송관로 배관기초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공해방지 시설인 회 이송용 배관의 기초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2) ○○회사장 보강공사로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와 외곽 배수로 공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폐기물인 석탄회를 매립, 공해방지를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하게 설치한 부대시설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3) 만일 과세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취득세의 납부시기?

회 신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열거된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귀문의 회이송용배관, 지하수수질검사정, 배수로시설 등이 위 법상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21, 2001.01.08]

6. 지방세 과오납 환급가능 여부

【질 의】

당사는 1988년 10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동토지를 매입후 전소유자와 전전소유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유권 말소 소송의 소가 제기되어 '99년 12월 대법원에서 전전소유자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당사명의 토지가 2000년 5월 원인무효로 소유권

이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동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기납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취득연도부터 소급하여 반환 청구하였으나 관계 당국에서는 종합토지세는 승소자에게 소급 과세하여야 하나 5년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5(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거 과세할 수 없으므로 패소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며 취득세의 반환도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함.

취득한 토지가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취득세 환부 청구권 기산일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대법원 확정판결일)부터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므로 5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도 상기 사유와 같이 5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내용과 같이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전액 반환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회 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법 제234조의9 제3항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입니다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에 취득세 환부여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 시효중단여부 및 과세처분의 당면무효여부(대판94다35787 참조) 등에 관해 과세권자가 면밀히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25, 2001.01.08]

7. 천재 등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면여부

【질 의】

2000년 9월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산업이 '96~'99동안 지방세를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것을 포착하여 취득세중 국세포함 56,642,380원을 2000.10월 수시분으로 추징하였으나, 당 법인의 사업장이 2000. 10. 25일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 신청한 것과 관련 법 적용상 이 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범위에 기 발생한 지방세도 감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은 천재·지변·화재·전화·기타 재해로 불특정다수인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으로 귀문과 같이 특정인의 단독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화재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2 및 제16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세정 13430-32, 2001.01.09]

8. 농어촌특별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질 의】

외국법인 “갑”은 1999년도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여 2000년 3월에 과점주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당시에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시청에서 당초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점주주취득세를 추가로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하에서 과점주주취득세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취득세과세대

상재산(토지·건물등)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바(지방세법 제111조제4항), 해당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농어촌특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시청에서 해석한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 제(주식취득)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대법원판결 1983.12.13 83누103) 할 것이므로, 귀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이미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인 「자산총액」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행심 제2000-386호, 2000.5.30 참조)됨.

[세정 13407-36, 2001.01.09]

9. 신탁재산취득시 비과세대상여부

【질 의】

주택건설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허가 절차에 의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편의상 관청의 요구와 사업의 진행 편의상 재건축조합원의 대지 등 낡은 APT의 지분을 조합명으로 명의만 신탁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신탁사실을 표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계속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되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지분 신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신탁 해지합니다. 건물은 멸실 등기하고 대지만 신탁합니다. 위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초 조합원 소유의 재산을 조합명으로 신탁등기하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납부에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 설> 1997.8.30일자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등록세중 소유권이전이 아닌 기타의 등기건당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유> 개정전 세법 제110조제1항 의거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단서 신설로 비과세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위 세법 제105조제10항 신설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외부에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용 취득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고, 기타(일반분양용) 용도의 취득은 조합이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함이며 세법개정으로 비과세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함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도 과세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을 설> 조합원이 조합에 명의(등기)신탁하는 것은 형식상 등기취득이므로 취득세와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단서규정을 1997.8.30일 신설하여 비과세규정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 과세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회 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됨.

[세정 13407-69, 2001.01.16]

10. 산업단지내의 기계장비 취득세감면 여부

【질 의】

A사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에(1994.12.19 실시계획승인) 입주하여 원자재반입 및 제품수출을 위해,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민자투자)로 부두(안벽길이 550m × 폭 150m : 30,000톤급 1선서5, 5,000톤급 2선석)를 축조 중에 있으며, 현재 안벽길이 120m × 폭 150m의 부두공사를 완료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허가와 사설항로 지정 · 고시를 득하여(2000.11.21) 사용 중에 있으며, 하역장비(B.T.C)를 설치 완료하여 인증기관에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축조중인 부두가 산업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준공후 국가 귀속되는 부두 위에 설치하는 하역장비(B.T.C)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생산을 위한 공장용 시설로 인정하여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의 유무와 다른 법령에 의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회 신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0.12.29 법률 제6060호)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기계장비(B.T.C)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세정 13407-68, 2001.01.16]

1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여부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는 1999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수도권지역)에 제조업 및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후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 11월 13일 충북 음성군(수도권 이외지역)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여 2000년 12월 26일 음성군수

로부터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제조업)을 신축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하였으므로 이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질의 법인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창업 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님.

<을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는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창업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면제대상임.

회 신

취문의 경우 “갑설(면제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세정 13407-76, 2001.01.17]

12. 물적 분할로 취득재산의 취·등록세 면제여부

【질 의】

당회계법인의 고객회사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 분할에 의한 신설합병을 하고자 하는 바, 분할신설법인이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0조의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7조제1항(물적 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동조규정의 감면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과세권자가 법인장부등을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99, 2001.01.27]

13. 유흥영업장이 있는 건물의 취득세 증가여부

【질 의】

갑은 2000년 11월 20일 ○○법원 경매법정에서 ○○시 ○○동 1번지 대 700평방미터와 동지상 5층건물 연건평 2400평방미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낙찰받고 같은 해 12월 19일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5층인데 지하층은 대중목욕탕으로 사용하고 1층에서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당구장 등이 있고 5층 370평방미터는 성인클럽이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한 후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구하였으나 불응하여 현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관할 시청에서는 갑이 법원에서 낙찰받아 현재 영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또 이 건물을 인수한 후 유흥영업장을 개설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5층에 유흥영업장이 존재하므로 증가세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위의 경우 갑이 낙찰받은 건물에 유흥영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증가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의하면은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한다고 하였으므로 위의 경우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 과세를 한 후 이후 유흥영업장이 계속 개설되었을 경우 그 때에 증가세하여 추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귀견은 여하하십니까?

회 신

구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2000.12.29 개정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증가세되는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장이 있는 건물을 법원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라도 그 유흥주점 영업장 부분은 취득세가 증가세됨. [세정 13407-114, 2001.01.31]

1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질 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판정기준이 이 조항이 시행되는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도 판정기준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증가세제도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지?

회 신

1973년부터 시행하여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증가세제도는 최근 경제여건 및 기업환경의 변화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증가세제도 존치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1.1.1부터 폐지하였습니다.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212호)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토지의 적용은 2001.1.1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도 증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증가세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는 2001.1.1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토지의 활용 여부, 매매 등에 관계없이 법인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세정 13407-113, 2001.01.31]

15.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시 취득세의 종과세 여부

【질 의】

당사는 금번 기존 골프장을 승계 취득함에 있어 주식을 100%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999.1.1부터는 기존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종과세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100%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바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시 종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일반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 규정에 의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때를 포함함)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세율의 100분의 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존의 골프장을 1999.1.1 이후에 승계 취득하면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종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129, 2001.02.02]

16.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한 공장시설의 취득세 종과여부

【질 의】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취득한 후(당초 등록세 종과가 배제) 당해 공장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지방세 종과세 추징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가. A사는 1997년에 설립(본점: 경상남도)하여 비알콜성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사는 1997년 12월 30일자로 맥주와 비알콜성음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B사의 비알콜성음료사업부분에 대하여 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서울지역에 위치한 공장 및 영업소용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용 자산을 그 영업형태와 인적·물적 설비의 변동없이 그대로 인수하였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A사는 당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와 건물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공장 포함) 설치에 따른 등록세 증가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귀 부서에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법인으로부터 영업 및 관련자산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양도법인의 본점·지점·사무실을 양수법인의 지점·사무실 등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 등을 소속만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증가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세정 13407-가 227, 1998.3.7)을 받아 당해 취득 공장에 대하여 일반 세율(1,000분의 30)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다. 그 후 A사는 당해 공장에서 종전의 형태대로 생산 및 물류보관 등의 활동을 계속하다가 생산시설의 집적 및 대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1999년 10월경 당해 공장내 생산설비 일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당해 공장건물과 토지를 물류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공장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증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2.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어 당초 등록세 증가가 배제된 공장에 대하여 그 생산설비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배제되었던 증가분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가.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물류창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점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는 지점등이 설치된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일체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후 지점설치없이 종전의 공장부지내에 물류창고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점설치가 되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새로운 지점 설치여부 등을 관련자료에 의거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130, 2001.02.02]

17. 가등기권리자에게 취득세 과세가능 여부

【질 의】

甲과 乙에 예약권리자로 하여 甲소유 丙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완결일자는 1994.6.30임) 1994.1.17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甲과 乙은 매매예약완결일자가 지나도록 서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甲소유의 丙부동산은 가등기권리자인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할 수 없게 되어 丙부동산은 계속 甲의 소유상태로 있다가 1999.9.29자로 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가등기를 해지하는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乙은 丙부동산에 대하여 일정기간(가등기일부터 가등기해지일까지) 가등기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당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丙부동산은 당해 가등기 설정기간

중에도 甲의 소유상태에서 甲이 사용하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乙은 법률상 및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가등기권리자인 乙에게 丙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함으로 귀문의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상 잔금지급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144, 2001.02.07]

18.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여부

【질 의】

자영업(기계제작)을 하다가 상법 제290조(현물출자)에 의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상업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자영업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을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록세와 취득세는 조세특례법 제119조제1항제7호와, 제120조제1항제6호에 의거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 역시 면제되는 것으로 하는데, 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담당하시는 분의 해석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바, 본인과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이전 경유시 농특세법 제4조제8항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지, 아니면 다른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세정 13407-142, 2001.02.07]



외국의 세제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세

류 금 렬

행정자치부 세제과 세제1담당

I. 서 언

독일의 지방세는 기본법과 各州의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Kommunalabgabengesetz)의 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¹⁾는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할 수가 있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는 오락세, 제²주택세, 犬稅 등의 독자적인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세목들로부터의 세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

고는 그다지 크지 않다. 최근들어 이러한 지방세들을 둘러 싸고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의 내용이 변경되고 세수에 비해 사무처리 부담이 적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의 독자 과세는 자치권을 재정적 측면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각 기초단체에서는 새로운 세목의 도입이나 기존 세목의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

1) 독일의 기초자치단체는 주(Länd) 아래 Stadtkreise 또는 Kreisfreie Städte, Landkreis, Gemeinden(Städte 포함)가 있다.

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기초자치단체 세제의 개요와 변천, 그리고 최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기초자치단체세의 개념

기초단체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외에도 주의 입법에 따라 지역적 소비세 및 사치세(Örtliche

Verbrauch-und Aufwandsteuern)를 과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기초단체의 조세 및 사용료·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각주의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의하여 기초단체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례로 정하여 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이와 같이 기초단체가 조례로 신설한 세목을 基礎團體獨自稅라 한다).

'99년 독일 기초단체의 독자세 세수

(단위: 백만 마르크)

| 주 별 | 오락세 | 제2주택세 | 건세 | 음료세 | 수렵·어업세 | 주점면허세 |
|------------------------|-------|-------|-------|------|--------|-------|
| 합 계 | 525.8 | 86.0 | 367.0 | 27.5 | 49.8 | 5.3 |
| Barden-Württemberg | 70.8 | 15.0 | 48.4 | - | 5.3 | - |
| Bayern | - | - | 29.0 | - | - | - |
| Brandenburg | 10.8 | 3.9 | 12.4 | - | 0.5 | - |
| Hessen | 34.0 | 2.3 | 24.7 | 27.4 | 5.3 | 4.7 |
| Mecklenburg-Vorpommern | 9.8 | 1.3 | 8.6 | - | 0.3 | - |
| Niedersachsen | 69.4 | 16.8 | 40.3 | 0.1 | 7.2 | - |
| Nordrhein-Westfalen | 179.5 | - | 103.5 | - | 18.1 | - |
| Rhineland-Pfalz | 23.2 | 0.3 | 18.5 | - | 10.4 | 0.6 |
| Saarland | 8.0 | - | 4.7 | - | 0.5 | - |
| Sachsen | 17.0 | 0.2 | 13.7 | - | 0.1 | - |
| Sachsen-Anhalt | 13.3 | 0.7 | 11.7 | - | 0.3 | - |
| Schleswig-Holstein | 23.9 | 35.0 | 12.4 | - | 1.7 | - |
| Thüringen | 9.3 | - | 7.9 | - | 0.0 | - |
| Berlin(도시주) | 19.4 | 5.5 | 23.0 | - | - | - |
| Brenmen(도시주) | 7.7 | 0.9 | 3.5 | - | - | - |
| Hamburg(도시주) | 29.8 | 4.1 | 4.7 | 0.1 | - | - |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 Finanzen und Steuern (Fachserie14, Reihe4, Vj u. Jahr 1999)

기초단체독자세의 과세여부, 과세대상 등의 내용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진다. 현재 과세되고 있는 기초단체독자세는 오락세, 제2주택세, 犬稅, 음료세, 수렵세, 酒店免許稅가 있다.²⁾ 이들 세목으로부터 징수되는 세수는 '99년도 기준으로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약 1,061백만 마르크로서 같은 연도의 기초단체세 전체 세수 68,504 백만 마르크의 약 1.5% 정도이다.

기초단체의 독자세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세수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초단체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 세목의 세수가 영업세 등 기간세목의 세수에 버금가는 경우도 있다. 기초단체의 세목 신설권은 기본법 제28조제2항³⁾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재

원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영업세 및 부동산세에 관한 세율의 자주결정권과 함께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외에도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설된다. 예를 들면, 오락세는 게임 중독자의 억제나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⁴⁾으로 하며, 견세는 거리의 미화나 위험 방지를 위해 개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Ⅲ. 기초자치단체 독자세의 법적 요건

1. 기본법상의 요건

독일의 기본법 제105조제2a항은 「주

2) 이들 세목중 오락세 및 견세의 과세근거로 일부 주에서는 오락세법, 犬稅法을 제정한 경우도 있고,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의해 기초단체에 과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과세 여부, 과세대상 등 과세내용을 기초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초단체독자세로 보기로 한다.

3) 동조항에서는 “기초단체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역적 공동체 전체의 사항을 자기 책임으로 규율하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박으로 인한 병적 증상은 도박을 허용하는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의회는 '96년 국가도박영향연구위원회(the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를 설치하여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3백만명의 미국인이 도박으로 인한 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박, 파산, 폭력, 이혼, 자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방세지 '99년제5호에 실린 필자의 “미국의 소비세 - 그 뒷 이야기”중 pp.123-126 참조.

는 지역적인 소비세 및 사치세가 연방법률에 규정한 조세와 동종의 것이 아닌 한 또는 그 한도내에서 조세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6조제6항은 「지역적 소비세 및 사치세는 기초단체 또는 주의 입법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연합⁵⁾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법 제105조제2항의 「연방은 기타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경우와 제72조제2항의 요건⁶⁾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조세에 대하여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에 근거하여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⁷⁾에서 소비세·사치세 이외의 세목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단체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 현재 과세되고 있는 세목은 주점면허세 뿐이다.

2.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상의 요건

5) 기초단체연합(Gemeindeverband)는 기초단체들이 구성한 광역행정조직이다.

6) 기본법제72조제2항의 요건은 「연방영역에서 등가적인 생활관계를 만들어 가거나 국가적 이익을 위한 법적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연방법률에 따라 규율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7) 기본법 제72조제1항은 그 범위를 「경합적 입법의 영역에서 주가 입법권을 갖는 것은 연방이 그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영역 및 그 한도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의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단체 독자세의 과세 요건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의 특정

Hessen주 등 8개주에서는 기초단체들은 지역적 소비세·사치세를 연방법률로 규정한 세목과 동종의 것이 아니면 과세할 수 있다(그 밖의 주에서는 세목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기초단체가 지역적 소비세·사치세 이외의 세목을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

2) 과세시점에서의 재정상황의 고려

Nordrhein-Westfalen주 등 5개주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재정수입으로는 세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만

독자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오락세와 견세의 재정수입의 확보 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세출과의 연계성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다.

3) 주가 과세하고 있는 세목의 과세 금지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초단체는 주가 이미 과세하고 있는 과세객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과세주체의 특정

Barden-Württemberg주 및 Saarland주에서는 「기초단체가 견세를 과세한다」 또는 「과세해야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세목별로 과세할 수 있는 주체(과세권자인 기초단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5) 일부 과세 금지

아래 주에서는 특정 세목 또는 세원의 일부에 대해 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Schleswig-Hlostein주에서는 음료세, 주점면허세, 영화의 상영과 관련된 오락세

○ Niedersachsen주에서는 음료세, 주점면허세

○ Nordrhein-Westfalen주에서는 주점면허세

○ Bayern주에서는 음료세, 수렵세, 아이스크림세, 주택의 소유에 관한 세, 오락세

이러한 일부 과세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정책적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료세의 금지는 주내에서 음식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외의 주에서는 기초단체가 과세 여부를 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각주의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은 기초단체의 조세는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조례에는 납세의 무자, 과세요건,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간의 始期와 終期가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시는 상급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Saarland, Bayern,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Thüringen주에서는 감

독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중 Bayern, 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정한 표준조례(Mustersatzung)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에는 인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던 신세목을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인가에 맞추어 내무부 및 재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chleswig-Hlostein, Hessen주 등에서는 종전에는 독자세 과세를 위한 조례제정시 감독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했지만, 기초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는 인가제도를 폐지한 상태이다.

IV. 기초단체 독자세의 개요

1. 오락세(Vergnügungssteuer)

1) 개요

오락세는 영화·오락 이벤트·쇼·디스코·기계를 이용한 게임 등의 오락을 유료로 제공하는 데 대한 과세로 기본법 제105조제2a항의 사치세에 해당한다. 이세는 재원확보 목적외에도 오락 게임·도박 등의 중독자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 연혁

오락세는 중세 독일의 각 도시가 도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데서 기원한다. 17·18세기 사치에 대한 과세가 일반화되고 도박이외의 오락도 과세대상으로 확대되었다. 프로이센은 1794년 기초단체의 救貧을 위한 목적세로서 유흥세의 징수권을 부여했다. 당시의 과세대상은 당구, 무도회, 가장무도회, 극장, 음악회 등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후의 재정난을 겪던 시대에는 기초단체가 유흥세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1930년대에는 영화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높아 졌지만 1950년대에 이르러 TV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 비중도 급속이 낮아졌다. 최근에는 게임용 기계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3) 법적 근거

Nordrhine-Westfalen, Rhineland-Pfalz, Saarland 및 Brandenburg 4개 주는 특별법인 오락세법(Vergnügungssteuergesetz)을 제정하고, 동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제정된 기초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오락세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

주에서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오락세를 과세하고 있다. 도시주에서는 주법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4)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오락세의 과세대상은 유료로 오락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오락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영화, 오락 이벤트, 쇼, 디스코, 무도회, 기계를 사용하는 게임, 볼링, 당구 등이며 그 범위는 각 법률 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오락을 제공하는 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 상영자, 무도회 주최자, 게임기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 등이다.

5)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입장료 등의 수입액이 되는 경우, 게임기의 설치대수나 이벤트의 회장면적 등 외형적인 기준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세율은 수입액이 과세표준

인 경우에는 수입액의 일정율이 되며, 외형적 기준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또는 기계 1대당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 게임기는 설치장소나 기계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⁸⁾

6) 과세 면제

문화나 스포츠 모임, 특정한 인적 그룹(청소년, 병자, 장애자 등)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7) 최근의 법적인의

오락세의 개개의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의나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 목적의 게임기(당구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연방행정재판소, 97. 7. 7 판결 등).
- ② 게임기의 종류나 설치장소에 의해

8) 게임 중독자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殺人 게임기, 賞金附 게임기, 기타 게임기 순으로 세액이 차등과세되며, 설치장소가 게임센터나 도박장인 경우에는 레스토랑에 설치된 경우보다 세부담이 높다.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동 재판소, 93. 7. 7 판결 등).

- ③ 게임기나 이벤트의 과세시 매상고가 아닌 기계의 설치대수나 회장면적 등의 외형적 기준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 시스템으로 타당하다(동 재판소, 94. 3. 23 판결 등)

이외에도 주의 재판소 레벨에서도 오락세의 성격이나 개개의 과세 사례 등을 둘러싼 다수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2. 제2주택세 (Zweitwohnungssteuer)

1) 개요

제2주택세는 주된 주택이 아닌 副次的 住宅의 이용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기본법제105조제2항의 사치세이다. 부차적 주택이라 함은 주된 주택과는 별도로 이용하는 주택으로 휴가용 별장, 취업, 직업교육, 대학통학 등을 위해 사용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 제2주택세는 부차적 주택의 존재에 의해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하여 소재지 기초단체의 부담이 증가함에도 사용료 등으로

는 부담 증가분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2) 연혁

제2주택세는 비교적 새로운 세목이며 1972년 Barden-Württemberg주에 있는 뉴바린겐 지역에서 별장에 대해 과세한 것이 시초이다. 그후 관광·휴양지를 중심으로 과세가 확대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 대도시에서도 과세하게 되었다. 과세대상도 당초 휴가용 별장만이던 것이 취업, 직업교육, 대학통학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부차적 주택까지 확대되어왔다.

3) 법적 근거

주택의 소유에 대한 과세가 금지되어 있는 Bayern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초단체의 조례로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하고 있다. 도시주(Berlin, Bremen, Hamburg)에서는 주법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4)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소유자나 임차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한 주된 주택 이외의 주택사용 행위이다. 이 경우 주택은 적어도 일시적인 주거가 가능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된 주택과 그외의 주택의 구분은 주민등록법(Melderecht)상의 「주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은 年間最低利用日數(납세의무자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일수)를 정하여 두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주택세는 일반적인 생활상의 수요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사치세이므로 자신이나 가족의 주거에 사용할 수 없는 임대용 주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5)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자신 또는 가족이 부차적 주택을 이용하는 자이다. 즉, 자신 또는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부차적 주택을 소유하는 자, 자신 또는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부차적 주택을 임차하는 자, 무상으로 제공된 부차적 주택을 자신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대상이 부차적 주택의 사용이라는 행위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6)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연간임차료가 된다. 연간임차료는 평가법(Bewertungsgesetz)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물가상승율도 고려하게 된다. 기초단체에 따라서는 과세대상 주택의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세율은 연간임차료의 일정율로 정해진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정액 또는 과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하여 정액으로 정해둔 곳도 있다.

7) 최근의 법적논의

: 제V 장 참조

3. 犬稅(Hundesteuer)

1) 개요

견세는 개의 사육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기본법 제105조제2a항의 사치세에 해당된다. 견세는 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화나 위험의 방지 측면에서 개의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세

제로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과세하고 있다.

2) 연혁

건세의 원형은 1500년경의 중·동부 독일에서 개의 사육에 대해 곡물로 징수 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 서도 주에 따라서 사치세 또는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했다. 당초 건세의 과세권은 기초단체에 속했지만, 상급단체가 세수의 일부를 요구하는 권리를 장기간 보유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는 주와 기초단체 쌍방이 건세 과세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하였다. 전후인 1949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초단체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3) 법적 근거

Rhineland-Pfalz 및 Barden-Württemberg주에서는 특별법인 건세법(Hundesteuergesetz)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건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 밖의 주에서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의 세목 신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도시주에서는

주법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4)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은 일정기간 이상 개를 사육하는 행위이다. 납세의무자는 개의 사육자이고 개의 소유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사육하고 있는 자이다. 사육자는 개인·법인을 불문한다.

5)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개의 頭數이다. 이 때 개의 크기나 가치, 성별은 불문한다. 그러나 일정 연령에 미달한 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세율은 개의 두당 연간 정액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복수의 개의 사육과 맹견의 사육은 중과세된다. 규모가 큰 기초단체일수록 세율이 높는데 이는 도시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의 수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6) 과세 면제

시각장애자의 안내견, 경찰견, 군견, 신림공무원들이 사육하는 공용견은 면제 대상이다.

7) 최근의 법적논의

기초단체에 따라서는 투건에 대해 위험방지를 위해 증과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이것이 기본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000년 1월 19일 연방행정재판소의 판결은 투건에 대해 일반세율의 8배로 증과토록 규정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인정된 재량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음료세(Getränkesteuer)

1) 개요

음료세는 음료의 유상 제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기본법 제105조제2a항의 지역적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 과세하는 자치단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Hessen주 등 일부 주의 극히 적은 기초단체가 과세하고 있다.

2) 연혁

음료세는 독일의 소비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조세의 하나로서 12세기 이후

각종 공문서에서 음료세에 관한 기록을 흔히 볼 수 있다. 당초 음료세는 州稅였으나 후에는 기초단체세로 변화하였다. 1930년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과세대상은 「그 지역에서 음료를 소비하는 행위」에 한정된 음료세가 도입되어 1945년 이래 각주의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 등에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 들어 지역의 음식점 보호 측면에서 음료세를 폐지하는 기초단체도 많고 전국의 음료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프랑크푸르트시가 재정상황의 호전으로 2000년부터 이를 폐지하였다.

3) 법적 근거

각주의 기초단체조세공과법의 세목 신설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초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Bayern의 3개 주)에서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서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4)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음료의 유상제공이다. 이 경우의 음료는

반드시 사치성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음료의 제공이라 함은 제공을 받는 자가 당해 음료의 제공을 받은 장소 또는 그 장소와 공간적으로 연관이 있는 장소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소비하는 음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자이다.

5)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소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소매가격이라 함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청구액에서 음료세액을 공제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서비스요금 등을 포함한다. 세율은 소매가격에 대한 일정율(통상 5~15%)로 되어 있다.

6) 과세 면제

우유 등 특정 음료와 복지시설, 학교 등 특정기관에 대하여는 과세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7) 최근의 법적논의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초단체가 음료를 과세하고 있다. 이중 알콜 음료는 유

럽사법재판소가 2000년 3월 9일 판결에서 특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이외의 간접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한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독일의 기초단체가 과세하고 있는 음료세는 전체 알콜 음료에 대해 판매단계에서 과세하는 오스트리아의 음료세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영향이 독일의 음료세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다.

5. 수렵세(Jagdsteuer)

1) 개요

수렵세는 수렵권의 행사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기본법 제105조제2a항의 사치세에 해당된다. 수렵구가 기초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 광역에 이르는 경우에는 광역단체가 과세권을 갖는다.

2) 연혁

수렵세의 원형은 중세의 「수렵에 대한 現物稅」에서 볼 수 있다. 19세기 각 주에서는 수렵한 야수의 가치에 따라 세

액을 정하는 野獸稅의 과세권을 기초단체에 위임하였다. 제1차대전후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 재정균형법의 개정에 의해 현행 수렵세의 기초가 정해지고 그 이후 원칙적으로 기초단체세로 되었다. 1945년 이후부터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

3) 법적 근거

각주의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렵세를 과세한다. Bayern주에서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의해 수렵세의 과세가 금지되어 있다. 도시주에서는 수렵세를 과세하기 위한 주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4)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은 수렵권의 행사이다. 납세의무자는 수렵을 실제로 하는 자이다. 수렵권을 가진 자가 직접하는 수렵은 수렵권자가, 수렵권을 임차하여 행하는 수렵은 임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5)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연간 수렵가치가 된다. 수렵권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간임대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 경우 임대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렵권을 가진 자가 직접하는 수렵에 대해서는 인근 임대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한 연간수렵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연간수렵가액의 일정율로 되어 있다. Rhineland-Pfalz, Barden-Württemberg, Sachsen주에서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의해 上限稅率이 정해져 있다.⁹⁾ 그러나 그 밖의 주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6) 과세면제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가 수렵권을 가진 경우에는 수렵세의 면제 또는 경감대상이 된다.

9) 주별 상한세율은 Rhineland-Pfalz주는 20%, Barden-Württemberg주 및 Sachsen주에서는 국내거주자는 15%, 외국거주자는 60%이다.

6. 주점면허세 (Schankerlaubnissteuer)

1) 개요

주점면허세는 주점의 개설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지역적 소비·사치세는 아니고 일종의 기초단체가 과세하는 직접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과세근거는 기본법 제105조제2항이다. 이 세목은 질서와 건강 보호 차원의 정책 세제이다. 현재는 Hessen 및 Rhineland-Pfalz주의 일부 기초단체가 과세를 하고 있다.

2) 연혁

주점면허세는 중세 독일의 여러 도시들이 주점에 대해 과세를 해온데서 유래한다. 그후 19세기에 들어 프로이센에 의해 주점세는 기초단체의 면허세로 인정되었다. 제1차세계대전후에는 일시적으로 선반세라는 명칭의 기초단체세로 되었다가 1945년 이후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의해 기초단체세로 과세되고 있다.

3) 법적 근거

Sachen, Rhineland-Pfalz, Saarland 주에서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근거하여 기초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외 주에서는 기초단체조세공과금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고 도시주에서는 주점면허세를 과세하기 위한 주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및 Nordrhein-Westfalen주에서는 과세가 금지되어 있다.

4)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은 주점(Schankwirtschaft)의 개점이라는 행위이며 주점의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1회에 한하여 과세한다. 납세의무는 주점영업허가르 받은 시점에서 발생한다. 납세의무자는 주점 개설 허가를 받은 자이다.

5)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점포의 영업면적과 연간 매출액(개설 후 1년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음식의 총매출액과 음료의 매출액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음식의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

세율은 영업면적(m²)당 정액이며, 연간매출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된다.

6) 과세면제

공공성이 있는 경우(예: 병원구내의 식당 등)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를 한다.

7. 기타 기초단체의 독자세

위에서 본 세목외에도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세목이 과세되었다.

1) 주민세(Einwohnersteuer)

당해 기초자치단체내에 있는 주택의 사용에 대해 Baden-Württemberg주에서 과세하였다.

2) 아이스크림세(Speiseeissteuer)

아이스크림의 유상제공에 대해 Bayern주에서 과세하였다.

3) 乘馬用馬稅(Reitpferdesteuer)

승마용 말의 소유에 대해 Bayern주에서 과세하였다.

4) 생활환경정비부담금(Abgabe wagen Änderung der Gemeindverhältnisse)

건축행위에 수반하여 생활환경시설 등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해 건축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Schleswig-Holstein주에서 과세하였다.

5) 포장세(Verpackungssteuer)

1회용 포장재 및 1회용 식기에 대해 그 안에 든 음식물이 즉석에서 판매되는 경우 과세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V. 기초단체의 독자세를 둘러싼 법적논의

독일의 다양한 기초단체 독자세는 당해세의 존립에 관계되는 것부터 구체적인 세액의 결정방법에 이르기까지 수많

은 소송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다른 세목의 경우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초단체의 독자세는 일부 지역에서 밖에 과세되지 않고 과세대상 등도 다양한 점, 소득세 등에 부가세 형태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 다른 조세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부차적주택세의 경우 1972년 창설된 이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다.

1. 기본법에의 適合性

기본법 제105조제2a항에서 정하고 있는 ①소비세 또는 사치세인 것 ②지역적인 세인 것 ③연방법률로 규정한 세와 동종의 것과 관련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차적 주택의 이용은 사치세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차적주택세는 사치세에 해당된다고 판시(1983년 12월 6일)

2) 부차적 주택의 이용자는 당해 기초단체에 체재하는 기간이 짧은데 이를 지역적인 세목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차적주택세는 당해 기초단체내에 있는 사물에 관련된 지역적인 소비세에 해당한다고 판시(1983년 12월 6일)

3) 부차적주택세는 연방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세나 소득세 등과 동종인 것인지에 대해 동재판소는 부차적주택세는 부동산세나 소득세 등과 동종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1983년 12월 6일)

4) 기본법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 「과세의 공평성」의 원칙과의 관련해서 볼 때 부차적 주택의 이용자는 반드시 담세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세는 위 원칙들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동재판소는 개인 생활에 이용하기 위해 부차적 주택을 이용하는 행위가 경제적 능력을 가진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1983년 12월 6일)

5) 부차적주택세는 기본법이 보장하는 「일반적자유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재판소는 부차적주택세는 기본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해치는 정도로 불평등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1979

년 7월 26일)

2. 과세대상에 대해

1)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적어도 일시적 주거가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택이어야 하고 소형선박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동재판소1997년 4월 21일)

2) 투자목적으로 별장을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느냐에 대해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별장을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은 부차적주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동재판소 1979년7월26일 판결 및 만하임행정재판소 1991년 2월 21일 판결).

이것은 소유자가 경제적 이익만 얻고 그 주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투자목적의 보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주된 주택과 부차적 주택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상에 주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차적 주택으로 간주함(만하임행정재판소 1988년 9월 29일 판결)

4) 부차적 주택을 여가·휴양 이외의 목적(예: 취로, 직업훈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동행정재판소는 직업상의 필요로 이용하는 부차적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판시(1989년 2월 9일)

5) 타인 소유의 부차적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출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는 과세를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고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다(연방헌법재판소,1983년 12월 6일)

3. 과세표준의 산출방법

1) 소유자가 부차적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타인이 소유하는 부차적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통상의 임차료를 실제 임차료로 간주한다(유네브르크고등행정재판소, 1987년 11월 27일)

2) 동일주거에 대해 소유자가 직접사용한 기간과 투자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은 사용한 기간의 일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일할계

산한다(연방행정재판소, 1999년 6월 30일)

4. 납세의무자의 범위

법인이 거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자연인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만하임행정재판소, 1987년12월9일)

부차적주택세나 게임기에 대한 오락세 등 비교적 새로운 세목뿐만 아니라, 견세 등 역사가 긴 세목에 대해서도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의 사무부담이 늘고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판결에 따라 법적 정당성이 확인되고 판결에 맞추어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안정적인 제도를 확립할 수 있고 다른 기초단체가 같은 종류의 세목을 신설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VI. 기초단체 독자세의 최근 동향

기초단체 독자세를 둘러싼 최근 경향으로 1998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포장세에 관한 위헌 판결 이래 기초단체들은

신세의 창설에 대해 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포장세가 의도하는 정책목적인 일회용 용기등의 사용억제는 이에 관련된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폐기물의 억제를 꾀한다는 연방폐기물법의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동세는 위헌·무효가 되었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가 어떤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세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의 규정과 모순되는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신세 도입의 영역은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초단체중에는 馬稅, 모터보트세, 캠핑카세 등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는 징수비용에 비해 예상되는 세수가 미미하고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신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기초단체 독자세에서는 최근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 오락세의 과세시 게임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에 따라 게임기의 기종에 따라 차등세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또 록 콘서트 등의 이벤트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과세대상 확대 움직임이 있다.
2. 부차적주택세는 당초 관광·휴양지의 별장을 가진 기초단체를 중심으

로 과세되었지만 최근은 대도시에서도 과세된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도 당초 휴가용 별장만이었으나, 취업, 직업교육 이수, 대학통학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차적 주택까지 확대되고 있다.

3. 전세는 투건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투건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는 경향이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 곤란한 상황에서 과거 판결에서 법적인 안정성이 인정된 세목의 과세대상 확대, 세율의 인상 등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始期(시기)

그 到來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을 請求할 수 있게 되는 期限(民§152) 終期에 대립하는 用語이며, 예를 들면 明年 1월 1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 편집실 -

200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국세제도 해설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I. 머리말

최근의 조세정책은 97년 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 구조조정 촉진 등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었고, 99년 이후에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반 시책을 뒷받침하면서 봉급생활자의 조세부담 경감, 대중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면서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소득분배개선에 주력해 왔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2000년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구조개혁과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이라는 전체 경제정책 운용틀 속에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간 특정 정책목적의 지원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부문들을 정상화하여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개정내용을 개괄해 보면

첫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의료비 공제 등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으며,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저축 및 저축불입액의 5%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둘째, 그 동안 산업지원 등을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온 부문을 정상화하여 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수송용 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을 향후 6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정비하면서, 공공육 정상화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 등을 위해 교육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셋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및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였다.

넷째, 경제활력회복을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건설업, 유통업 등 16개 업종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도록 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에 대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납세자 권익향상등 세제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제거래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해 세제개편내용중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 주요개정내용

1. 주택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대체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2000.9.1부터 2001.12.31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상주택은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정하고, 신규 취득주택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주택 포함)으로서 선양도·후취득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고급주택·미등기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적용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

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2.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수도권지역의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지방건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5년경과후에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주택 포함)으로서 2000.11.1~2001.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② 동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경우 감면대상주택 판정시에 10%특별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별개로 허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①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② 2000.10.31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 ③ 분양권 구입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

은 감면대상에서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축국민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1. 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외의 범위(조특법시행령 별표7제1호의 수도권 준용)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용인시(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에 한한다)· 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 양주군 주내면· 백석면· 장흥면
- 포천군 소흘읍
- 화성군 태안읍· 반월면· 매송면·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
- 김포군 김포읍· 고촌면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기존주택임대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은 99.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2호이상 임대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중복되고 신축주택을 통한 임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택건설경기 진작에도 역행하므로 2001.1.1이후 양도시에는 2000.12.31까지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감면 적용시한을 조정하였다.

중전의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 특별부가세 감면 제도를 살펴보면, ① 86년~2000년 기간중 신축 주택과 ② 85.12.31 이전 신축주택으로서 86.1.1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③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④ 매입임대주택은 95.1.1 이후 취득 · 임대개시한 미입주주택 ⑤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4. 혼인으로 인한 일시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중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세

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3년이상 보유)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미혼 남녀로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후 혼인하여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던 것을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였다.

5. 재개발조합원등이 취득한 분 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보완

중전에는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APT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분양권 양도차익=총양도가액-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던 것을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중전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권의 양도

차익은 분양권 프리미엄과 부동산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명문화하였다.

가. 양도차익산정 방법을 분양권프리미엄과 부동산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표시

(1) 분양권 양도차익=분양권 프리미엄 + 부동산 양도차익

- ① 분양권 프리미엄={총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조합의 평가액±납부 또는 지급 받은 청산금)-기타 필요경비}
- ② 부동산양도차익={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조합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6.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보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며 공사 시행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판정시

예외적으로 농지로 인정하였다.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에는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양도소득세 종합한도 적용 대상임)된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제외한다.

- 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 ② 환지예정지 지정후 3년이 지난 농지 이때에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이면 된다. 2001년부터는 환지예정지 지정후 3년내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포함하였다. 다만, 공사진행 이후의 기간은 경작기간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7. 농지대토의 경우 구농지 경작요건 신설

중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농지대토시 다음의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 ① 新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

② 취득 및 양도기준: 구농지 양도후 1년내 신농지를 취득하거나, 신농지 취득후 1년내에 구농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면적 및 가액기준: 신농지면적이 구농지면적이상 이거나, 신농지가액이 구농지가액의 2분지 1이상일 때

그동안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의 요건을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8.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 조정

2000년 말까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주택(고급주택 제외)과 8년이상 보유 농지에 한하여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의무를 제외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에는 5천만원이하, ②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시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부동산양도자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9. 양도소득기본공제 조정

종전에는 양도소득 계산시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하여 공제하였으며, 이때에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공제 순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왔다. 그러나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세법체계의 단순화·명료화 및 세액계산의 편이 등의 측면에서 국내·외 자산 종류별(부동산·유가증권)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과세대상자산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다.

10. 실지거래가액중 토지·건물 가액 안분계산기준 개선

종전에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한 안분계산도 허용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토지·건물)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구축물등)

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① 장부가액에 의해 기준시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안분계산한 후, ② 기준시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도록 하였다. 기타 국제청장이 정하는 방법도 허용하는 등 토지·건물가액의 안분계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11. 예정신고지중 확정신고대상 신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하나, ①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기본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확정신고대상에 포함하였다.

12. 양도신고대상자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인정

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10% 세액공제를 불인정하였으나,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10% 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13. 가산세 적용배제

종전에는 무신고(미달신고) 및 무납부(과소납부)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신고불성실가산세: 미달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세액의 1일 0.05%(연 18.25%)> 하여 왔으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동산양도신고시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서(납부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없는 한 세액계산의 착오등으로 발생한 미달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①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②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14.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의 개선

과세대상 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감면 대상 자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서 기공제된 기본공제액이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에서 안분 공제됨으로써 동일한 세율하에서도 추정세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2001년 양도분부터는 계산산식을 조정하였다.

(중전)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과 과세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공제
(개정)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기본공제후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그리고 부동산 등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의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도록 하였다. 다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산

계산도 허용된다

15.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의 예정·확정신고기한 특례 신설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로서 거래허가 전에 잔금청산시(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토지)에는 예정·확정신고기한의 특례를 신설하여 대금청산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도과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중전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로부터 7년 5개월 내지 8년 5개월 경과한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므로 양도일인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가. 부동산 양도시 예정신고기한

(중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개정)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나. 부동산 양도시 확정신고기한

(종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정)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16. 환지처분시 감평(증평)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 보완

부동산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 감평·증평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에 대하여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한다는 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착오 및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17. 수용등에 의한 단기양도의 경우 실가과세 예외 신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대상으로 ①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② 고급주택, 미등기 양도자산,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④부정한 방법으

로 거래한 경우, ⑤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 실가를 증빙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더라도 수용(협의매수 포함)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8.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종전에는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당시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가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결의서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점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증여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당시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개정하였다.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9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평균)}

19. 의제취득일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납세자가 실가신고시 취득가액 보완

'85.1.1이후 취득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가신고를 선택한 때에는 환산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기타 실가과세대상의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84.12.31 이전 취득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실가신고를 선택한 때와 기타 실가과세대상의 경우에도 환산가액의 적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납세자가 실가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가를 입증하여야 하나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 실가입증이 용이치 못한 점을 고려,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납세자가 스스로 실가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예외를 허용하였다.

20.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보완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일반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기준시가가 고시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단순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가. 기준시가 고시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1) 일반건물

(중전)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시가표준액)}

(개정)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2) 공동주택
(중전)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
준액의 합계액)/(최초로 고시한 기준
시가 고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시
가표준액의 합계액)}
(개정)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
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최초로 고시
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개별공시지
가와 일반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21.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관련 지원세제의 일몰기한 연장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관련 지원을
위해 지원기한을 2003.12.31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1) 대상지원제도

- ① 대도시 공장·수도권 법인본사 지방
이전시 양도소득세등 50% 감면 또
는 과세이연
- ② 10년이상 경영 목장 이전시 양도소
득세등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③ 5년이상 가동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
세등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④ 영농자녀가 농지·초지·산림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법 제
5584호 부칙 §15)
- ⑤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법 제5584호 부칙 §16)
- ⑥ 농·수·임협의 토지등 양도에 대
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 i) 농·수·임업협동조합의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간 토지등 양
도: 특별부가세 면제
 - ii) 5년이상 사용한 조합 또는 농업기
반공사의 목적사업시설인 농어민
등 지원시설 이전: 특별부가세50%
감면
 - iii) 조합·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의 유통자
회사에 토지등 현물출자시: 법인
세 면제·특별부가세 이월과세

22.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001년말까지 1년간 연장

- 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
해 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감면율은 75%로 축소)
- ② 법인이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

- 한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감면율은 75%로 축소)
- ③ 합병금융기관 등이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④ 정리금융기관 등이 취득한 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⑤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 (3년간 연장)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收得稅 · 消費稅(소득세 · 소비세)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얻는 財産에 대한 조세의 총칭이며 收得稅는 所得稅와 收益稅로 분류된다. 소득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人稅이고, 收益은 物體를 중심으로 한 物稅인데 所得稅는 세원, 租稅客體, 課稅標準이 모두 소득으로서 가장 理想的인 조세이다.

消費稅는 消費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세방법을 直接消費稅라 하는데 이는 課稅技術上 容易치 않으므로 間接徵收方法으로 課稅하는 直接消費稅가 필요하게 된다. 消費稅 과세방법은 間接과세방법과 流通과세방법이 있는데, 間接과세방법에는 生産過程에 따라 原料課稅, 製造課稅, 製品課稅가 있고 流通課稅는 運搬課稅와 販賣課稅가 있다. 이 이외에 獨占課稅方法으로 財政專賣가 있다. 財政專賣의 이익에서 一般利潤을 공제한 잔액을 消費稅로 보는 것이다.

- 편집실 -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시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이 해 성

경기도 세정담당

I. 머리글

우리 도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모든 납세자에 대한 공평과세실현과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대책 지침을 수립 시달하고, 세수증대활동비로 4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센티브제 실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세 납부제 실시 및 상·하반기 체납액징수 평가실시 후 우수시군에 3억원의 상사업비보조 등 총 10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입장료 현금징수, 카드대금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채권확보부동산 공매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과 소송승소로 인한 체납액 징수 등으로 2000. 9월말 현재 이월체납액 6,815억원의 16.9%인 1,048억원을 정리하였다

또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예금·급여 전화압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신용거래불량등록 등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과주시 등 6개시군의 경우에는 평균 정리율이 27%로서 도 전체 평균 체납세 정리율 16.9%보다 11.1%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액 정리율이 전년도 동기 정리비율보다 3.5% 감소하고 있어 연도 폐쇄기까지 단계별 체납액 정리계획에 의거 강력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도의 그동안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처리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지방세 체납현황

1. 체납규모

우리도의 금년도 9월말 현재 체납액 규모는 5,137억원으로 도세1,935억원(38%), 시군세 3,202억원(62%)임

- 연도별로 '96년말 2,343억원에서 '97년 687억원증, '98년 917억원증, '99년 1,703억원증, 2000년도 현재 513억원 감소로 총 2,795 억원이 증가되어 IMF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되었다고 하겠음
- 시군별로는 고양시 507억원(9.8%), 성남시 465억원(9.0%), 안산시 459억원(8.9%), 부천시 395억원(7.7%), 용인시가 368억원(7.1%)임
- 세목별로는 취득세 1,512억원(29.4%), 주민세 1,289억원(25.0%), 자동차세 1,125억원(21.8%), 종토세 467억원(9.0%), 재산세 288억원(5.6%)순임
- 체납원인별로는 부도폐업 1,580억원(30.7%), 납세기피 1,309억원(25.4%), 무재산 1,063억원(20.6%)이며
- 체납건수는 총 2,999천건으로 주민세 762천건(25.4%), 자동차세 722천건(24.1%), 면허세 556천건(18.2%), 종토세 399천건(13.3%), 재산세 289천건(9.7%)로 나타났음

2. 체납실태

전국 체납액 2조8,393억원중 서울시가 1조993억원으로 38%, 우리도가 5,137억원으로 17.7%, 부산시가 2,087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세수 규모인 22조1,912억원의 31%인 6조9천억원이 서울시, 20%인 4조6천억원이 우리도, 7.6%인 1조7천억원이 부산시로 나타나 지방세수 규모와 체납세율이 유사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IMF 경제위기 여파로 '99까지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 자주재원 확보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진행결과 체납액 누증율이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금년도 전체 세수규모의 13% 수준이다.

주요체납요인으로는 부도·폐업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취득세분 체납액과 국세 부가분 주민세할이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가 지연 통보됨에 따라 그사이 주소변경, 담세능력상실 등의 사유로 부과·징수 시기를 일실하여 체납액이 발생되며 빈번한 자동차 이전·폐차·도난 등의 사실상 무소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98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세무부서 조직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도내 약 3백만건의 체납세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주요 세목별 체납사유

1) 취 득 세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비과세감면 추정분 소송제기중
- 취득신고만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취득세는 체납
- 취득물건에 명의만 빌려주어 취득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기피 등

2) 주 민 세

-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가 지연 통보되어, 그동안 주소변경·부도 등에 따라 체납 발생
- 균등할의 경우 세대 기준으로 부과하여 거소를 달리하는 주민등록자나 소액으로 인한 납세의식 부족으로 체납됨
-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확정되기전까지 주민세 납세기피

3) 자동차세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시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 사실상 도산·폐업된 법인소유 자동차가 종업원이나 제3자에게 불법이전·운행 중으로 매년 체납액 증가
- 개인간의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됨에 따라 체납됨
- 사실상 도난·폐차·멸실된 자동차에 매년 부과됨

4) 종합토지세

- 토지보유시점인 매년도 과세기준일(6. 1)과 납기개시일(10.16) 사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 분쟁으로 체납 발생
-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 상존

5) 재산세

- 토지보유시점인 매년도 과세기준일(5. 1)과 납기개시일(6.16) 사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 분쟁으로 체납 발생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미분양으로 인한 건축주 납세능력 부족

Ⅲ. 滯納額 定理를 위한 主要 推進事項

1. 인센티브 부여

체납액징수 등 세수증대를 위한 도비 지원

- 세수증대활동비 지원 31개 시군 : 460만원
- 도세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부여 31개 시군 : 300만원
- 체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급 20개 기관 : 300만원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재를 통한 체납액 정리

2. 체납자대상 징수활동별 추진실적

1) 체납처분

- 부 동 산 ⇒ 압류횟수와 관계없이 체납즉시 독촉고지후 압류
- 봉급 및 채권 ⇒ 직장 및 금융기관에 압류 촉탁의뢰
- 자 동 차 ⇒ 독촉없이 등록부서에 촉탁의뢰 및 번호판 강제영치
- 공 매 ⇒ 고액체납자를 선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 | | |
|---------------|----------|---------|
| ○ 부동산 압류 : | 204,558건 | 5,887억원 |
| ○ 봉급 및 채권압류 : | 95,560건 | 1,454억원 |
| ○ 자동차압류 : | 764,150건 | 2,154억원 |
| ○ 번호판영치 : | 63,089건 | 174억원 |
| ○ 공 매 : | 1,803건 | 295억원 |

2) 행정제재

- 관허사업제한 ⇒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모든 인허가를 제한
- 형사고발 ⇒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중 상습체납자 선정고발
- 신용불량등록 ⇒ 자영업자 및 법인 등을 우선으로 제재

| | | |
|-------------|---------|---------|
| ○ 관허사업제한 : | 54,820건 | 718억원 |
| ○ 형사고발 : | 43,280건 | 201억원 |
| ○ 신용불량자등록 : | 35,038건 | 3,896억원 |

3) 결손처분

- 무 재 산 ⇒ 전국재산조회(부동산) 및 금융재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재산자로 입증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3,670건, 460억원)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4) 고질체납차량정리

- 정리대상 ⇒ 사실상양도, 폐차, 말소 등으로 미소유사실이 입증된 차량으로서 입증일 이후부터 부과취소(16,505대 43억원)

3. 체납액 징수 역점추진방향

-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전개
-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을 일제조사
 - ┌ 징수 가능분 → 전직원 동원 체납액 징수독려
 - └ 징수불가능분 → 결손처분, 보유재산공매, 형사고발
- 체납액 과다 세목별 특별조치방안 모색강구
- 제도적 개선책 수립시행
- 체납액 정리를 위한 중앙건의 사항 조치

4.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1) 추진개요

- 특별정리기간 : 2000.11. 1 ~ 2001.3.31
- 추진방법 : 단계별, 조치계획별 세부운영계획수립 시행
- 추진체계
 - 도 : 특별정리계획 수립시달 및 지도점검
 - 시군 : 자체 실정에 따른 계획수립시행
- 특별징수대책반 구성운영
 - 총 팔 : 부시장· 부군수
 - 담 당 : 세무부서 담당과장
 - 운영사항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 체납자 조사결과 정리 및 징수계획 수립
- 1, 2단계 조치사항 일정별 추진계획대 실적관리
- 개인별 체납액 부여 및 징수독려

2) 체납대상 일제조사실시

전체 체납건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 구분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관허사업등을 지속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능분은 채권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확행

- 징수가능분
 - 주민등록 또는 거소 확인 가능자
 -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 소유자
 - 직업보유자(급여수령 또는 사업체 유지)
 - 신용카드 소유 및 사용자
- 징수불가능자
 - 부도·폐업법인이나 사업자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소확인 불가능자
 - 부동산 및 금융등 재산 미보유자
 - 정기적 소득이 없는자
 - 체납기간 5년이상자

5. 체납대상별 조치계획

제1단계 : 징수가능 대상자

- ⇒ 주민등록 또는 거소확인 가능자
- ⇒ 부동산 및 금융재산(예금, 전화가입권 등)소유자
- ⇒ 신용카드 소유 및 사용자, 직업보유자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 상습·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지속실시
 - 인·허가 부서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전 경유제 실시
-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및 자산관리공사 공매처분 확행
 - 행자부 전산망 및 도 지적정보센터 이용
- 체납자의 급여, 예금, 적금등 채권 활성화 및 추심
 - 채권확보 및 기 압류된 채권은 전액 추심
-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적극 등록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 연간 3회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이상 상습체납자
- 상습체납자 사법기관 형사고발
 - 1회계년도내 3회이상 상습 체납자
- 신용카드 소유 확인 체납액 납부 독려
 - 신용카드사에 체납자별 카드발급 여부 조회
 - 카드소지시 카드 대출식 체납액 납부 독려
 - 불응시 신용불량자로 등록, 이용제한 조치

제2단계 : 징수불가능 대상자

- ⇒ 행불자(주민등록 말소자로 거소불명자)이며 무재산자
- ⇒ 유재산자로 재산공매처분을 하여도 실익이 없는자
- ⇒ 부도·폐업된 법인대표자의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

-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소유 파악
 - 재산발견시 즉시 압류, 공매처분
-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조회
 - 전국 재산조회는 행자부에서 연4회로 한정 운영하고 있어 관내 금융점포로 수시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추심절차 이행
-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한 거주지 파악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통·반장문의를 통해 소재지 파악후 추적독려
- 행불자, 무재산자, 소멸시효 완성자등에 대한 결손처분 적극 이행
 -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과감히 결손처분 확행하되 처분이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 재 실시

제3단계 : 징수가능분 대상 전직원 특별징수제 시행

- 관내분
 - 시·군, 읍·면·동 직원 징수할당제 부여
 - 소속 부서장 일일 복명제 실시
 - 주간단위 부서장·부군수 징수보고회 개최
 - 징수실적별 포상금 지급(부서단위)
- 관외분
 - 세무부서 소속직원 대상 징수할당제 부여
 - 거주지 행정기관 협조 관허사업 제한등 조치

제4단계 :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 추진절차
 - 대상자선정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한자 중에서 내부기준에 의하여 선정
 - 고 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되 송달증명 등 입증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고발 취하 등을 사전에 방지
 - 사후조치
고발로 인하여 체납세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 중지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 '99 ~ 2000 고발 및 처리 현황 >

(단위: 백만원)

| 고 발 자 | | | 고발중 납부 | | | 처리결과 | | | | | | 잔여액 |
|-------|--------|--------|--------|--------|-------|------|-----|-----|----------|----|-------|--------|
| 명 | 건수 | 세액 | 명 | 건수 | 세액 | 벌금 | | 무혐의 | 기소 중지 | 체형 | 미통보 | |
| | | | | | | 명 | 금액 | | | | | |
| 3,520 | 53,029 | 23,107 | 1,045 | 10,600 | 2,992 | 73 | 171 | 42 | 803 | 40 | 1,702 | 20,115 |

IV. 체납액 과다 세목별 특별 조치

1. 자동차세

1) 현황 및 문제점

- 폐차·도난차량 등은 멸실 확인서에 의거 비과세 하나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는 미소유 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행)발급이 지난하여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관외거주자 사실확인을 관외 읍면동장이 발급거부
 - 부도, 해산법인 소유차량 무단이전사용
 - 양수인의 등록이전 미이행
 - 채권자가 임의 인도해간 차량
 - 오랜기간 멸실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미조치

2) 처리방안

- 사실상 폐차·멸실·파손·소멸된 자동차는 다음요건 구비시 비과세 처리
 - 본인의 사실확인 및 서약서 징구
 - 본인확인 불가시 이해관계인 또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사실 확인서 단, 정기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확인
 - 조사결과 납세의무자의 행발 불명이나 별도 재산 미소유시 결손처분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2. 취 득 세

1) 현황 및 문제점

- 부도폐업으로 법인이 부존재하거나 무재산이라도 공매완료·행불·회사정리법에 의거 납부의무 면제시에만 결손처분 가능
-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선납후 등기 가능하나 취득세는 취득후 30일이내 신고납부제로 되어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후 납세기피
- 저소득 또는 청소년층의 무분별한 보증·할부차량 구입으로 체납만연
- 본인의사와 무관한 상속 재산 취득시 납세기피 또는 상속자간 재산분할 분쟁등으로 체납

2) 처리방안

- 자산관리공사와 공매 및 배분에 관한 협정체결 후 일제 공매처분
- 취·등록세 동시 납부제도 중앙건의 조치
- 상속재산 체납액은 징수 가능 상속자 재산 압류 조치후 독려

3. 주 민 세

1) 현황 및 문제점

- 거소불명자 확인을 위한 행정력 부족으로 징수율 저조
- 국세 부가분은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가 지연되어 채권확보가 어렵고 이중납세 의식으로 납부기피
- 국세 결손처분시 지방세 부가분의 결손처분이 불가하여 사실상 체납액으로 존치
- 부도 폐업된 사업자 부가분도 계속 체납액으로 누증관리됨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2) 처리방안

- 재산조회 및 거주사실 확인후 결손처분
 - ※ 단 10만원미만 소액체납액은 재산조회 없이 행불확인시 결손

V.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제도적 조치방안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업무 협정체결

'97. 8. 7 공매업무 협약체결로 매각업무만 대행하고 배분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배분 등의 집행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체납세 징수 도우미제 운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으로 체납세 관리 및 독려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의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직공무원 및 대민 접촉이 많은 전직공무원, 보험설계사 등을 징수 도우미로 위촉하여 체납세 징수독려에 활용

3. 경찰과 체납차량 합동단속반 운영

은행중인 체납차량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로 야간에 정지되어 있는 체납차량만을 단속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므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4. 체납세 정리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체납자중 채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압류 후순위 등으로 공매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음에도 형식상 재산을 소유한 상태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선순위 압류·저당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시책을 통한 체납액 정비

설정등)이 다소 상존하고 있으므로 결손여부를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

5. 체납세 징수 포상금제 실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98. 7. 3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본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므로 개선토록 권고된 사항이나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포상금제 재도입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VI. 징수실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1. 지방세 결손처분 적극실시

1) 근 거 : 지방세법 제30조의3, 지방세법 제82조

2) 추진사항

- 무재산 행불자인 경우
 - 전국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 소유여부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채권 보유여부 확인
 - 세무서 신고용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등(제2차 납세의무여부)확인
 - 사업양수로 인한 2차 납세여부(경락및보험법에의한 양수제외)
 - 행불여부 확인
 - ※ 행불 판단 :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 있으나 실제 현존하지 않는 유령 법인과 개인은 사실 조사후 행불 여부 판단
- 체납처분 종결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경우
 - 체납세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압류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압류한 재산의 추산 금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못 미칠 경우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적극추진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 ※ 근거: 국세징수법 제85조, 동법 제86조, 국세통칙 3-12-1-85참조
- ※ 본 사항을 양도양수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적극 활동
- 소멸시효 완성분의 경우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지방세법 제 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95 이전분은 전액 결손처분
 - ※ 지방세법 제30조의5

VII. 무배당 등 실익이 없는 체납자 처리지침

경매가 개시되어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체납세교부 청구시 채권 압류가 후순위여서 배당이없거나 부족하고 환가가 가능한 재산은 이미 매각이 완료되어 사실상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함

1. 현실태 및 문제점

1) 주요사유

- 법 인
 -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 파악
 - 법인의 소유로 등기된 도로·하천 제방 등은 자투리땅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잔존
 - 법인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으나 불확실한 자동차(법인의 부도나 해산시 채권자들이 무단 인수해간 자동차등) 등 존재
- 개 인
 - 행방불명인 상태이거나 법인의 경우와 같은 재산률이 남아 있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한 결손처분이 어려운 실정임

2. 유형별 결손처분요령

1) 부동산소유

- 법인의 소유로 등기된 도로·하천 제방 등은 자투리땅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호의 의거 체납처분을 중단하고 결손처분
- 결손처분이전에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을 재산별로 조서를 작성하여 과세권자의 체납처분중지 결정 확행
- 법인의 명의로 된 사실상 폐차·멸실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고질체납차량정리요령에 따라 비과세 하고 차량의 인도·보관·환가가 불가능함을 명시한 후 결손처분

2) 채권 후순위 또는 잔여금액이 없을 경우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채권의 담보순위가 현저히 후순위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담보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을 충당하고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결손처분 실시
- 기타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결손 처분
 - ※ 재산의 추산가액 환산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입증된 가액과 선순위 채권자의 추산가액을 고려하여 결정

VIII. 결 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국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흐름이 체납액·징수율의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정사례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식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세입관서에서는 경기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기존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정비하는 등의 인위적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좀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납세고지서가 송달 불능한 경우 징수유예기간 6개월 한을 연장 조정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형사고발을 위한 내부 기준안을 마련하여 고발함으로써 상습 체납을 예방하며, 증가하는 체납차량 정리를 위하여 납세필증 부착부활과 지방세법 개정시 주민세 결손처분조항을 종전과 같이 부활시키는 방법 등을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온 체납액에 대하여 획기적인 징수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정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모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의 선결 과제중의 하나인 만큼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체납액 정리에 힘을 시점이 아닌가 한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手數料(수수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役務에 대하여 그 報償으로 徵收하는 料金を 말하는데 이에는 국가가 징수하는 手數料로서 法院이 행하는 訴訟節次 또는 非訟事件 절차에 대한 司法上의 手數料, 行政機關이 징수하는 租稅등의 加算金, 각종의 허가 또는 免許의 手數料등과 같은 行政上의 手數料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長도 특정한 개인을 위하여 하는 事務에 대하여 각종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 편 집 실 -

건축물 비허가지역 과세대상 조사 사례

김 홍 래

충북 제천시 세정담당

I. 머리말

지방세관련 법령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 단일법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일반법의 준거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은 물론이고, 같은 조세로서 국세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관련되어 있음이 명문화되어 있는 등으로 관련법은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이처럼 법률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대사회가 다원화되는 관계로 지방세분야에 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데, 지방세에 있어 타 법령의 개정이 영향을 미친 사례로 '93년도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규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는 유흥음식점이 일반유흥음식점과 무도 유흥음식점으로 분류되면서 허가시 업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됨으로써 립살롱을 허가 시 “일반유흥음식점(업태: 립살롱)”으로, 나이트클럽 등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허가 됨으로써 허가대장에 따라 중과세하면 되었으나, 위 허가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가 '93년도에 개정되어 일반· 무도 구분없이 “유흥주점”으로 통합됨으로써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해당여부는 위생부서의 대장만으로는 곤란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후에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 이 사항은 지방세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 사항이기도 한데 이렇듯 지방세도 관련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이며 최근에 지방세 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건축의 착공신고를 완화하는 「건축법」의 개정을

세정사례

건축물 비허가지역 과세대상 조사 사례

들 수 있을 것이다.

건축허가·신고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착공에 신고가 필요하던 것이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소위 “건축 비허가지역”의 일정규모이하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요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허가·신고사항 및 착공신고에 크게 의존하여 오던 취·등록세, 재산세 과세물건의 탈루가 예상되는 바, 우리 시에는 이와 관련, 새로이 「건축비허가지역 발생 건축물 조사지침」을 제정·시행하여 효과를 보고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II. 경위

국민의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99. 2. 8. 건축법이 개정되어 소위 건축 비허가지역에서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착공신고도 없이 토지가 대지로만 되어 있으면 지상 3층이하, 연면적 200㎡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었다.

건축 비허가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철도변 100m 이내, 고속국도변 100m 이내, 일반국도변 50m이내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 '99.2.8. 이전 모든 건물 착공신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 있으며, 이는 소위 건축비허가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인데,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더라도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는 해야 한다. 즉, 모든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이다.

2. '99.2.8. 이후 일부 착공신고 불필요

'99.2.8. 건물의 착공신고를 규정하는 건축법 제16조가 개정됨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세정사례

건축물 비허가지역 과세대상 조사 사례

문구자체는 <표 1>에서 보듯이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다. 조문내용이 변경전이나 그 후에도 공사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나, 착공신고의 대상을 변경전에는 “건축공사”라고 함으로써 허가·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건축공사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변경후 개정건축법에서는 착공신고의 대상을 “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로 한정함으로써 허가나 신고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조차 필요없게 된 것이다.

<표 1> 건축법 제16조 변경 전·후 비교

| 변 경 전 | 변 경 후 ('99. 2. 8.) |
|---|---|
| 제16조(착공신고 등) ①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제16조(착공신고 등) ① 제 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Ⅲ. 문제점

건축허가·신고 배제대상 건물에 대하여 착공신고까지 배제하도록 건축법 관련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세업무추진상 상당한 문제점이 파생되는 실정이다.

1. 해당지역의 면적 방대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은 대부분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이며 건축법상 착공신고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읍·면지역과 변두리 동지역은 건축비허가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충북 제천시의 전체면적중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세정사례

건축물 비어가지역 과세대상 조사 사례

면적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2.32km²로 전체면적의 93.2%에 달하고 있고, 제천시에 특수한 청풍호와 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임야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전체면적대비비율은 20.3%에 이르는 실정이다. (임야·하천제외 면적비교는 임야의 상당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 동지역은 제외)

기타 지역 중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철도변 100m이내, 고속국도변 100m이내, 일반 국도변 50m이내가 있고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대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제 건축비허가·무신고지역은 <표 2>의 기타지역 면적보다 상당히 감소되기는 할 것이나 그 면적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표 2> 도시·준도시·기타지역별 면적 현황

(충북 제천시)

(단위 : km², %)

| 읍면동별 | 전 체 | | 도 시 지 역 | 준도시 지역 | 기 타 | | | |
|------|--------------------------|--------------------------|------------|-----------|--------|-------------------------|-------|------|
| | 전체(A) | 임야·하천 제 외(B) | | | 면적(C) | 임야·하천 제외 (D) | 비 율 | |
| | | | | | | | C/A | D/A |
| 계 | 882.36 (읍면 787.96) | 209.73 (읍면 170.22) | 56.27 | 3.77 | 822.32 | 160.2 (읍면지역 만 계산) | 93.2 | 20.3 |
| 봉양읍 | 144.85 | 31.03 | 4.68 | 0.29 | 139.88 | 26.06 | 96.6 | 18.0 |
| 금성면 | 68.37 | 18.06 | 0 | 0.35 | 68.02 | 17.71 | 99.5 | 25.9 |
| 청풍면 | 91.66 | 28.69 | 0 | 0.80 | 90.86 | 27.89 | 99.1 | 30.4 |
| 수산면 | 88.96 | 25.93 | 1.57 | 0.32 | 87.07 | 24.04 | 97.9 | 27.0 |
| 덕산면 | 109.83 | 15.74 | 0 | 0.58 | 109.25 | 15.16 | 99.5 | 13.8 |
| 한수면 | 75.86 | 11.97 | 0 | 0 | 75.86 | 11.97 | 100.0 | 15.8 |
| 백운면 | 135.34 | 20.21 | 0 | 0.13 | 135.21 | 20.08 | 99.9 | 14.8 |
| 송학면 | 73.09 | 18.59 | 0 | 1.30 | 71.79 | 17.29 | 98.2 | 23.7 |
| 동지역 | 94.4 | 39.51 | 50.02 | 0 | 44.38 | - | 47.0 | - |

※ C/A : 기타지역면적의 전체면적대비

D/A : 기타지역중 임야·하천제외면적의 전체면적대비

(동지역은 비교대상에서 제외 : 동지역 임야 중 도시지역 있어 비교가치 적음)

2. 지방세법상 신고의무 조항의 형식화

현재 지방세법에는 건축과 관련하여 신고하는 규정으로는 제120조와 제192조를 들 수 있을 것인데, 제 120조는 취득세관련 신고 납부조항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실효성이 있다 할 것이나, 재산세과세와 관련한 제192조의 경우 신·증·개축을 포함한 건축물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형식화에 그치는 실정이다.

물론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관련 신고가 있으면 이를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제92조의 신고대상(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하여져 있음)에는 제120조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되는 것으로 제92조의 신고 규정이 중요성을 띠고 있다 할 수 있다.

3. 정기조사시 누락 가능성 상존

제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세법 제92조 건축물관련 신고 조항과 관련하여 제재 조항이 없는 관계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내역을 재산세관련 건물신고로 가름하는 것 이외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3~4월경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있는 실정이다.

사실 건축물일제조사는 '80년대 초반까지는 별도의 인력을 임시로 고용하여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등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 '70년대까지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사용하던 가옥대장 증명이 현재의 건축물대장 역할까지 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단속이 강화되어 굳이 대규모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크게 감소된 외부적인 이유와 인력부족 등의 내부적 이유로 '80년대 후반이후에는 건축물일제조사가 그 이전만큼 철저하게 시행되기 어려워 년 1회 정도의 건축물일제조사시 건축물 비허가지역의 신·증·개축등 건축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조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정사례

건축물 비허가지역 과세대상 조사 사례

4. 읍·면·동 기능 전환시 조사 효율성 저하 예상

'99.2.8. 이전까지는 건축허가·신고대상이던 아니던 간에 모든 건축물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건축부서에 신고된 내용으로 지방세과세자료 파악이 가능한 반면 '99. 2. 8. 이후 건축허가·신고 배제대상 건물은 착공신고가 필요 없고 본인이 원할 경우 건축물대장기재 신청만 가능하여 세무부서의 별도 조사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향후 읍·면·동 기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위 건축비허가지역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취득세 부과권 소멸우려

건물에 관련된 지방세로는 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등록세는 등기할 때의 문제이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매년 1회씩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5년이내에는 과세할 수 있어 설령 5년이 경과된 년도분은 부과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5년분은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특정 건물에 대하여 단 1회만 과세가능할 뿐으로 건물 신·증·개축후 5년이 경과하면 전혀 부과할 수 없다.

건축주가 건축후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세는 차치하고라도 합법적으로 취득세는 포탈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건축후 5년이내에는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세수증대 측면뿐 아니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으로 건축비허가지역에서의 이들 건축물 조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V. 개선방안: 건축 비허가지역발생 건축물조사지침 제정운용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건축비허가지역 발생 건축물 조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정사례

건축물 비어가지역 과세대상 조사 사례

1. 운용방향

지방세과세자료 작성시 건축물의 경우 건축부서의 건축 허가·신고사항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왔으나, 건축비허가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건축주 본인이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기 전에는 쉽게 도출되기 어려우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일제조사시에는 탈루면적이외에도 구조, 용도, 소유권 변경등 포괄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건축행위가 활발한 3~11월경에 이들 지역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건축물조사를 하기로 하는 것이다.

2. 운용내용

가. 시기

신·증·개축 건물부분은 건축후 가능하면 최단시일내에 확인하여야 구분이 용이하므로 최소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나. 방법

1) 1차 : 신·증·개축건물 조사

마을 담당 공무원이 일반 출장시 신·증·개축건물의 조사를 실시하되 일반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건축중인 경우 건축현장목격을 하던가, 건축완료된 경우에는 벽돌이나 지붕 색깔등의 인접 건물과의 신선한 차이 등으로 신·증·개축건물을 발견하도록 한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세무공무원이 없다 하여도 마을 담당 공무원이 세정과등에 제보만 하면 세정과 등에서 2차이후의 조사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례는 읍·면·동 기능전환이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2차 : 재산세과세대상확인

마을 담당 공무원이 발견한 건물에 대하여 재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세과세대상

세정사례

건축물 비어가지역 과세대상 조사 사례

으로 누락 건물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3) 3차 : 건물변동사항신고안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임이 밝혀지면 본인에게 지방세법 제 192조 및 시군세 조례 관련규정에 따른 건물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표 3>과 같이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다.

<표 3> 건축물 조사 안내문

귀하

귀하의 가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축하여 사용하고 계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5조 및 제68조와 제천시세조례 32조에 의거 서면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신고가 되고 있지 않아 엄정하고 공정한 지방 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코자 하오니 조사공무원이 귀하의 가정(업체)을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할 사항 :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구축물 부대설비등
 - 조사방법 :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귀하의 협조에 실측조사후 건축물소유자(사용자)의 서명날인을 받음.
 - 조사결과 자료의 이용 : 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 과세자료로 이용되며 지방세법 제69조(기밀유지)에 의거 법이 정한 규정 이외에는 과세 정보가 누설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 협조의 의무 : 법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에 의거 귀하는 본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 조사는 건축법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건축물대장등제아님)
- ※ 제천시세조례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증,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000.

읍. 면. 동 장

세정사례

건축물 비허가지역 과세대상 조사 사례

4) 4차 : 기간내 미신고시 현지실측

건물변동사항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로 재무담당자로 구성된 현지실측반이 현장출장하여 면적을 실측하고 구조, 용도, 실제사용일자 등을 조사한다. 소유자인적사항 파악 및 현황도면 작성후 소유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 시 비소지를 차단하되 서명, 날인거부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한다.

5) 5차 : 조사결과 집계(분기 1회이상)

읍·면·동에서 조사한 결과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본청 세정과 등으로 제출하고 세정과에서는 이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추정하도록 한다.

다. 유의사항

1) 현지조사시 민원마찰 방지

건축비허가지역에서 일정규모이하의 건축행위는 비록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위법이 아니므로 조사시 건축주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사와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에 앞서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 권리현장이 교부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 변동신고 안내시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미신고시 조사예정 일시를 예고하는 등으로 건축주의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건축물대장과 무관 안내

한때 재산세과세대장이 가옥대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일종의 건축물대장 역할도 한 적이 있어, 재무부서에서 실측하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또한 일반주민은 건축부서나 재무부서나 모두 행정기관의 일로 한 번의 실측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모두 작성되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측시에 지방세 과세자료만으로 사용됨을 주지시키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을 안내하도록 한다.

V. 맺음말

지방세업무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부분이 다른 법령과 연계되어 있으며, 최근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가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령개정을 하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운용방안개선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건축 비허가지역 과세대상 조사사례』는 운용방안 개선으로 타 법령의 개정에 대처한 경우라 할 것이며, 세수증대뿐 아니라 읍·면·동 기능전환시 지방세전반에 걸친 과세자료조사방향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隨時賦課(수시부과)

普通徵收方法의 일종으로서 法定 納期에 따라 賦課徵收하는 免許稅 定期分, 住民稅, 財産稅, 自動車稅, 農地稅,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의 탈누분의 別途賦課하는 것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隨時分)와 事業所稅의 申告納付方法에서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신고액의 부족등에 대한 追徵의 경우 및 屠畜稅의 경우와 같이 특별징수하는 경우 申告納入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과세권자가 별도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隨時賦課라 한다.

그리고, 自動車稅에 있어서도 自動車를 納期開始後에 原始取得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自動車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自動車稅를 수시로 賦課할 수 있다 (地稅法 §196의 6 ② 단서).

- 편집실 -

지방세고지의 효율적 송달방안에 대해

윤 종 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재무담당

I. 머리말

현대의 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빈번한 직장이동으로 인한 주소이전 그리고 주거의 형태가 과거와는 빠르게 상상도 못하게 변화하고 있어 거소에 따른 지방세 고지의 송달방법도 기존송달방법(우편, 직접전달)과 함께 보다 다양한 송달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에 부과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과세권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과세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고지송달하는 것이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최종의 단계로 중요한 행정행위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볼 때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加算금이 가산되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납세고지의 송달은 조세의 채권 채무가 확정 변경 소멸하는 조세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납세고지의 송달은 일선재무행정에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사안이다.

현업부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하는 송달방안에 대해 몇 가지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편의증진과 지방세원

의 효율적·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시책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개 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있어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정기분 고지서 송달시 대부분 우편 또는 리·반장을 통한 송달에 의존하고 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연간 8,457건이 정기분으로 부과 고지되고 있으나 이중 약 8% 인 640여건이 미송달되어 우편송달이나 고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우편송달은 주소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등으로 반송이 많을 뿐더러 공시송달을 취한 상태에서 과세를 계속 하게 되면 체납액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차후 체납세징수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시비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신뢰세정구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기분 고지서 송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반송되는 납세고지에 대

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송달부를 관리함으로써 송달방법의 합리화와 신뢰성을 구현, 징수율의 향상을 제고하였다.

III. 지역특성에 맞는 송달 방안 강구

우리 관내지역은 총 2,183가구에 인구가 6,383명이며 軍 籍적지역으로서 원주민보다는 군인가족과 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가가 번성하고 있어 어느 대도시 못지 않은 음식점과 상가를 비롯해 여기에 종사하는 유동인구 또한 많이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가구수가 약 30%, 상업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약 30%에 달하고 군인가족 가구도 30%이며 나머지가 군무원과 공무원 등의 가구분포를 나타나고 있다.

유동인구에 대한 생업의 종사여부를 살펴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는 군인과 가족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유동성이 높다 라고 판단된다.

그만큼 원주민보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지방세고지에 있어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이 전입해 오는 군인과 가족에 대한 고지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전입

신고부터 정확한 주소를 몰라 적당히 작성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사내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주는 동시에 차량을 함께 전입해 올 시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간 간단한 제증명을 무료로 발급해 주는 시책을 마련 추진하였고 아울러 전입신고 용지 공란에 양식을 삽입, 핸드폰 전화번호는 물론 이웃집 전화, 근무처, E-mail 주소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새로이 전입해오는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 송달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99년도 반송율 5.3%) 보다 약 3%로 낮추는 효과를 보았다.

우리 관내에서 납세고지의 효율적 송달방안으로 추진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신자숙소(군인) 및 실거주지 파악에 주력, 별도 송달 대장 작성 관리

지역특성상 軍접적지역으로서 군장병들이 많아 갓 전입해온 독신자 군인이 주민등록지를 전입해 놓고 부대관사 또

는 친지와 함께 거주하는가 하면 잘 아는 가구에 기거하는 관계로 납세고지송달이 안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정확한 고지를 위하여 이들 납세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송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납세고지에 적지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독신자 숙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와의 유기적인 친분과 협조로 납세자의 거주여부와 어디로 진출하였는지를 신속히 파악, 고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여 본의 아니게 체납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었다.

아울러 직장관계, 개인사정상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 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주소도 별도로 작성관리 송달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는 물론 지방세징수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2. 사망자 호적정리 안된 납세물건 납세고지

결혼과 동시 부모와 따로 생활하는 핵가족사회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농촌에서 젊은이들의 도시로의 이동현상 등이 심화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부모가 사망하였을 시 상속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호적부라든가 관계서류를 찾아 납세의무가 적절한 자녀에게 부과 송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사망한 지 오래되어 자녀가 부모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납세고지로 인해 없었던 납세물건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즉히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3. 체납액 가구가 빈집일 경우 납부안내문 전달

재무담당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가구를 방문시 빈집일 경우에는 체납액 독려사항을 알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체납액 납부 독려를 했다는 사항을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안내문을 제작해 현관문이나 적당한 부분에 삽입 전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메모지 형식의 안내문에는 체납액 내역과 납기등 상세한 내용을 기입토록 해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마을담당공무원 일제 출장징수시에도 휴대 사용토록 하였다.

4. 인터넷의 고지방안에 대한 개선안

컴퓨터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납세고지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부서에서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우선 각 가정에 보급해 있는 그 컴퓨터의 주활용목적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면, 즉 각 가정에서 구입,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주로 자녀들의 학습용이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사용자는 학생이므로 납세자인 부모에게 인터넷을 통한 납세고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실태를 사전에 잘 알고 있는 사내면에서는 관내 학교의 협조를 얻어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부모 성명과 학생들의 e-mail을 함께 파악 납세고지사항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수준으로 활용하였다.

더군다나 각 인터넷 회사에서는 거의 경쟁적으로 무료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추세이고 컴퓨터 n 세대인 학생들의 이메일 가입은 컴퓨터의 본인 보유 유무를 떠나서 90% 이상 가입하고 있는 실정므로 납세고지의 한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5. 군부대 지방세 안내문 게시 용자로 정기적 송부와 순회 방문으로 납세홍보

관내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연유로 임관 또는 전속으로 갓 전입해 오는 군장병들이 수시로 많다. 이들 또한 납세의무가 지어진다면 납세자라고 보고 사전 지방세 홍보에 나섬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입대전 또는 임관하여 전입하여 오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가 납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독립된 세대가 되고 한편 결혼과 동시에 독립된 가정을 갖게 되면서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는 당면성을 지니게 된다.

사례 중에서 군 봉급생활자중 가장 궁금증을 갖고 문의하는 것이 주민세 항목이다. 봉급에서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왜 또 균등할 주민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경우 체납하는 사례가 있어 각 부대에 마련된 게시판을 활용, 알기 쉬운 지방세목상식을 납기별로 작성해 송부하여 게시토록 협조를 요청하여 군인

들의 지방세 상식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상식교육과 특별강좌를 통해 납세의무를 다하는 의무감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군인 아파트와 관사 등 집단 거주지 등에 설치된 게시판에 알기 쉬운 지방세 상식을 별도로 작성 게시함으로써 납세고지를 간접적으로 송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6. 관내 집배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송달효과 제고

납세고지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은 집배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집배원은 하루에도 몇백통씩 우편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들만의 전달 노하우가 있다.

이와 같이 납기별 수천통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세무부서에서는 반송되는 고지건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일단 납세고지에 명기된 주소로 송달된 후 반송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담당자와 1차적인 확인후 리·반장에게 문의 및 이웃 등에 확인을 하여 반송하게 된 사유와 재송달에 대한 방편과 송달결과를 송달부에 명기하고 재송달 한다.

이 경우 사내면에서는 반송된 납세고지에 대해서 정정된 주소를 기입해 송달토록 집배원과 협조를 하였고 이와 같은 절차를 다하여도 반송 송달이 되지 않는 납세고지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독신자 숙소와 군인아파트등은 관리사무실에 협조를 얻어 직접송달하는 방안도 마련해 송달후 반송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였다.

IV. 결 론

이상에서 납세고지의 효율적 송달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 참고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중 대다수가 세무담당자의 조그마한 관심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더욱이 지역실정에 맞는 납세고지 송달방법의 개선은 곧바로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받고 민원편익증진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확고히 인식시켜주는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권위주의식 세무행정에서 탈피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행정서비스는 보다 실질적이

고 유동적인 분야의 개선이 그 효과가 더 크고 일반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복잡 다양하고 고도화된 사회 그리고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속에서 일반 주민은 한없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행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능동적인 자세로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쌀과 도자기, 풍요로운 여주(驪州)

강 욱

자유기고가

여주(驪州)는 잔잔히 흐르는 여강의 은빛물결과 함께 문화유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고장이다. 여주를 말할 때 남한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바로 남한강 뱃길의 중간 지역에 있는 여주는 한때 번성을 했으며 술한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 사람들이 여강이라 부르는 남한강은 충주시에서부터 시작해 서울에 이르는 뱃길로서 예전에는 ‘나라의 길’로 불릴 만큼 중요했다. 신작로나 철도가 뚫리기 전까지는 경상도나 충청도나 강원도와 같은 곳에서 나는 갖가지 산물들과 사람들이 한강의 뱃길을 타고 와서 서울 땅에 닿았다. 그때에는 지금의 고속도로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실을 했음직하다. 그런데 그 뱃길이 1974년 팔당댐이 생김으로써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남한강 뱃길의 정서와 함께 살아온 여주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노릇이라 하겠다.

고려 말기의 대학자였던 이색은 이곳을 “들이 편편하고 산이 멀다.”고 그의 시에서 읊었다. 여주군 전체 면적의 54%가 임야이니 산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를테면 여주읍에서 북쪽으로 보면 우뚝 솟은 양평군의 용문산과 같은 높은 산이 없다. 여주군의 지세는 남한강 언저리에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와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산은 야트막하고 그나마 대부분 군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여주에는 기원전 십 세기쯤부터 청동기 문화를 지닌 농경부족이 농사를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점동면 혼암리에 있는 선사시대의 집터에서 발견된 탄화된 벼를 보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요충지였다가 광개토왕 때 잠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후 다시 백제에 속했다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475

문 화 기

년 고구려의 영토가 되면서 끝내근현이라 불리웠다. 그 후 한강 언저리에서 땅 싸움이 벌어지면 이곳은 이긴 쪽의 땅이 되었는데, 황효, 황려, 영의, 여강, 여흥, 여성, 여주 등으로 여러 차례 땅이름이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이곳의 역사가 여강의 흐름처럼 잔잔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이곳이 역사적으로 중요시 된 것은 꼭 군사적인 이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내륙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곡창지대였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의 학자 서거정은 여주를 가리켜 “강의 좌우로 펼쳐진 숲과 기름진 땅이 멀리 몇백리에 가득하여 벼와 기장과 수수가 잘되고, 나무하고 풀 베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데에 적당하여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택리지’에서도 대동강 언저리의 평양과 소양강 언저리의 춘천과 함께 나라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촌으로 꼽았다.

여주는 기름진 땅과 물이 늘 넉넉하여 벼농사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천군과 더불어 자채쌀의 산지로 이름이 났다.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벼알이 여무는 8~9월의 날씨가 최고의 적온으로 밥맛을 저해하는 아밀로스가 다른 쌀에 비하여 적게 함유되었다. 그래서 최고의 밥맛을 인정받아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려졌다.

예나 지금이나 여주군은 농업이 주된 생활 기반이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농업에만 매달린 것은 이 지역이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탓도 있지만 농사 말고는 달리 벌이가 될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팔당댐의 상류지역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도원인 이곳에는 강을 더럽힐 만한 공장이 일체 들어설 수 없었고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여주는 맑고 푸른 남한강과 문화유적들을 관광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여주팔경’이니 ‘금사팔경’이니 하는 말은 옛날부터 이름났던 이곳의 빼어난 경치 여덟 군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색이나 정몽주나 이곳에서 태어난 이규보와 같은 선비들의 시귀에서 ‘여주팔경’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어 더러 없어지거나 변해버린 것도 있지만 ‘동국여지승람’은 이곳의 팔경으로 여강 언저리에 내려앉은 기러기, 청심루에서 바라본 달, 연촌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 학동의 저녁 연기, 신륵사의 종소리, 마암 아래에 떠있는 고깃배의 등불, 영릉의 신륵, 팔대수의 우거진 숲을 꼽았다. 그 중 청심루에 올라서면 여주 팔경을 다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여주 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이 누각은 해방이 되자마자 일어난 폭동 때 불에 타서 없어졌다.

문 화 기

영릉과 신륵사는 여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이다.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영릉(英陵)은 성군(聖君)으로 추앙 받는 세종대왕과 왕비 소헌왕후의 합장 능으로 본래 광주군 대모산에 있던 것을 예종 때에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영릉은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능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합장릉이기 때문에 혼유석이 두좌가 있으며 동자주에 12간지를 운자로 새겨 놓았고 장명등은 8각으로 되어있다. 조선 제17대 효종대왕의 능릉(寧陵)은 영릉에서 1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신륵사(神勒寺)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강을 두고 위치해 있다. 이 절 안에는 고려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벽돌탑이 있기 때문에 흔히 벽절이라고 불린다. 남한강이 바로 앞을 지나 흘러서 옛날부터 경치가 아름다웠던 이 절은 모두 이백간이 넘었는데 임진왜란 때 다 타버렸다. 오직 단 하나 남아 있는 건물은 대들보가 없는 집인 조사당(祖師堂)으로 보물 제 180호로 지정되어 있다. 잣더미가 되다시피 한 신륵사는 이조 숙종 때에 복원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의 모습을 되찾았다.

북내면 상교리에는 신라 때(764년)에 지은 고달사(高達寺)라는 절터가 있다. 이 절은 언제 어떻게 폐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쓰러지고 그 터에는 부도와 같은 돌 조각품만 쓸쓸히 남아 있다. 창건 당시의 사역은 실로 광대하여 지금의 상교리 일대가 전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보 제4호인 고달사지부도는 8각 원당형 부도 가운데 손꼽히는 작품으로 상륜부만 없을 뿐 각 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부도는 화려하면서도 장중하고 정교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여주에는 명성황후(明成皇后) 민비의 생가, 파사성지, 서희 장군묘, 이완 대장묘, 목아 불교박물관, 여주 잠사 민속박물관, 석봉 도자기미술관 등 유적과 기념관이 산재해 있다.

여주는 도자기의 고향으로 이곳에서 나는 점토는 응집력이 강하고 빛깔이 윤택하여 고려시대부터 자기원료의 주산지로 이름이 났고 조선조에는 백자의 근원지가 되었다. 현재 600여개의 도자기 업체가 청자, 백자, 분청, 와태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만들며 매년 5월에는 '도자기 박람회'가 열린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드물게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여주는 쌀, 도자기와 함께 땅콩, 참외, 고구마, 표고버섯, 배 등이 특산물로 꼽힌다. 금사면 금싸라기 참외는 남한강변의 퇴적토인 사질토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당도의 맛이 뛰어나 전국에서 생산되는 참외 중 특상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

재산·자동차세 납기 분리

행자부, 중복따른 국민부담 해소 검토

재산·종토세 과세기준일도 통일키로

지방세 납기와 과세 기준일이 조정된다. 납기 중복으로 인한 불편과 과세기준일이 달라 빚어온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8일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돼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과세 기준일이 다른 일부 세목의 기준일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중복돼 있다. 지난해에는 전북도와 지방세정협의회에서 과세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 및 업무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재산세는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도 기준기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세 납기는 학자금과 농어자금등 다른 자금 필요시기와의 중복을 피해 국민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쪽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기준일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기준일도 5월1일로 통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일 통일안은 지난해 민주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했었다.

행자부 권강웅(權康雄)세제심의관은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세목의 납기조정과 과세기준일을 통일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 지방세 징수규모는 23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매일, 2001. 2. 19(월)]

부도기업 체납세 받아냈어요

서울 중구 역순이 남현종 씨

서울 중구청에선 포기상태였던 7억9,000여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세무과 한 여 직원의 활약상이 화제다.

세무1과 체납징수 담당인 남현종 씨(44·여·세무7급). 남씨는 87년부터 지방세를 내지 않다 97년 부도난 덕수건설 앞으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려 하자 갖은 노력 끝에 여러 채권기관중 우선순위로 체납세금 7억9,80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중구 체납세금중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액이다.

체납세금을 받아내기까지 남씨가 보인 끈기와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나오는 토지보상금이 청산된 덕수건설에게 지급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도시개발공사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접수시켰다.

하지만 은행과 세무서 등 선순위 채권자가 이미 있었다.

그러나 남씨는 하루종일 재판기록을 뒤진 끝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패소,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빚을 받을 수 없게 되자 98년 덕수건설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소송을 제기했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다. 선순위 채권자들의 덕수건설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남아있어서다. 불확실 공탁으로 소송을 해야만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어 우선 압류 해제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7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제일은행측 누구도 압류 말소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남씨는 은행장실 앞에 아예 누워 버렸고 가까스로 압류말소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26일 공탁일에는 ‘시간과 피말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도시개발공사 보상팀장과 함께 법원 공탁과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미비로 다시 구청에 와야 했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눈물로 호소해 비상등을 켜고 달려 오후 4시30분이 넘어서야 법원

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4시55분에 드디어 보상금이 입금됐다. 남씨는 다음날 출근하면서 세무과 전직원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박수세례를 받으며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었다. 79년 공무원이 돼 21년간 세무업무를 맡아온 남씨는 “크리스마스과 연말을 포기한 채 뛰어다녔다”며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대한매일, 2001. 1. 19(금)]

공과금 납부 인터넷으로 고지

오는 7월부터 지방세 납부와 같은 고지 및 통지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우편물 대신 인터넷 고지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및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세부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인터넷 e메일로 고지하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우편발송을 병행해왔다.

[대한매일, 2001. 3. 2(금)]

고지서 우편물 홍수 이젠 그만

인터넷업체 개발 전자고지서 행정기관 앞다퉈 도입 인기

‘각종 세금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맞춰 ‘전자고지서 발송시스템’이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문서로 발송할 때보다 수수료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공·사문서를 한꺼번에 발송,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입증할 수 있고 보안도 잘된다. 곧 입법이 예상되는 ‘전자정부

지방세징 스크랩

구현 법률'에도 전자고지서의 송달입증을 명문화하고 있어 이같은 시스템 도입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자고지서 발송시스템의 대표주자는 인터넷 업체인 (주)아마스코리아. 이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이미 22개 기초단체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운용방법은 우편번호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 회사가 개발한 'Family ID'가 자동식별해 가정에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식이다. 가정에서는 이를 확인한 뒤 주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5월 이후 서울 강남구·송파구 등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연(李明然) 아마스코리아 사장은 “이 시스템을 올해는 시단위, 내년에는 군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통신료·의료보험료·국민연금·수업료·신용카드 사용료 등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www.amasmail.com)나 전화(02)523-2985.

[대한매일, 2001. 2. 23(금)]

세금고지서 이메일로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高在得)는 다음달 2일부터 각종 세금정금나 지방세 관련 자료를 주민의 이메일로 전송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 인터넷 세무민원실을 개편한 '온라인 무료상담 코너'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세금고지서나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고자 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www.sungdong.seoul.kr)에 접속해 '성동구웹메일'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세무민원도우미'를 클릭한 뒤 '지방세 상담코너'에 들어가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한매일, 2001. 2. 28(수)]

소비세 징수액 작년 첫 감소

경기침체로 소비둔화

지난해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둔화해 소비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특별소비·주세 등 3개 소비세 징수액은 12조 5,939억원으로 1999년의 12조6,617억원에 비해 0.5% 줄어들면서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제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대우자동차 최종부도와 반도체가격 하락, 국제유가 불안정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유 소비량은 전년 1,788만2,981kl에서 1,828만 5,120kl로 증가한 반면 휘발유 소비량이 1,000만 652kl에서 970만671kl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세액은 8조3,8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7% 줄었다. 그러나 경유와 LPG, 승용차, 공기조절기 등에 부과된 특별 소비세액은 99년의 1조8,521억원에 비해 11.5% 증가한 2조 649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일보, 2001. 3. 6(화)]

토지정보 안방서 ‘클릭’

서울 강남구 첫 인터넷 서비스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세요.’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文勇)는 29일 토지·건축물 대장과 개별공시지가 등 모든 토지 관련 종합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 토지 관련 각종 증명은 지하철역, 은행 등 관내 62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지방세정 스크랩

이 정보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토지종합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토지의 지목·면적·등급, 건축물의 면적·구조·층별용도·필지별 도시계획사항, 지적도면·건축물 배치도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62곳에 설치돼 있는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상반기중 41곳에 더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매일 2001. 1. 30(화)]

광진구 공시지가 백서 발간

지가동향·변동내역등 소개

서울 광진구는 1일 전국 최초로 공시지가(公示地價)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개별공시지가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90년 도입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

백서에는 관내 동별 지가동향을 비롯해 연도별 지가변동 현황, 최고·최저 지가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또 공시지가의 도입 배경에서부터 지가조사 및 산정체계의 변천내용, 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범위, 조사체계, 조사 및 산정방법 등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등 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정리돼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 외에도 지난해부터 공시지가 결정 전에 주민들이 지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사전 열람제도를 시행하는 등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 3. 2(금)]



자치복권 당첨 이야기(8)

작동 안 되는 현금지급기 덕에 1억원 당첨!

대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공씨. 42세. 현금을 입금시키기 위해 은행의 현금지급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공씨 차례가 되자 작동이 딱 멈춰버렸다. 할 수 없이 은행원이 현금지급기를 고치는 동안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치복권 5장을 샀는데 글썽 1억에 당첨되는 행운이.....

조그맣게 옷가게를 하는 공씨. 장사를 시작하기 전 그녀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은행. 그 전날 매상을 입금시키기 위해서다. 그동안 여러 장사를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10원짜리 하나라도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수익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2년 전 옷가게를 하면서부터는 매상이 얼마가 오르든 들어온 모든 돈은 고스란히 은행에 입금시키고 한 달마다 얼마씩 비용을 꺼내 사용한다.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돈좀 벌었죠. 새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매상이 많이 오르면 한턱 낸다고 돈 쓰고 안 오르면 은행에 가기도 뭐해 갖고 있다가 이리저리 쓰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돈이 좀 붙으려나 생각하는 공씨의 심증을 더욱 확실하게 다지는 사건

이 터졌다. 그녀가 바로 자치복권 1억원에 당첨된 것이다.

“지금껏 매일 은행에 가면서 항상 현금지급기를 사용했어요. 입금만 하면 그만 아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었는데 그 날은 웬 일인지 제가 탁 앞에 서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현금지급기를 고치는 동안에 공씨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자치복권 5장을 사게 되었고 1억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평소에 복권을 잘 사지 않은 공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달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은행에 갈 때마다 복권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